

第28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21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석면피해보상관련 제정법안에 관한 공청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석면피해보상관련 제정법안에 관한 공청회 2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37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강석호·권영진·권택기·나경원·신상진·안형환·안효대·원희룡·이달곤·임동규·조해진·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37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7.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우남 · 강성천 · 송훈석 · 조진형 · 박순자 · 정진섭 · 신상진 · 박민식 · 이명규 · 정해걸 · 정갑윤 · 의원 발의)(계속)	38
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이운성 · 이경재 · 정갑윤 · 박종희 · 이계진 · 이명규 · 김태원 · 구분철 · 윤석용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38
1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이운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분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38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성 의원 대표발의)(이운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분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38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걸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정갑윤 · 안형환 · 홍장표 · 송훈석 · 김재윤 · 윤석용 · 박준선 · 조원진 · 원희목 · 김태원 · 이경재 · 조해진 · 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38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8.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김영진 · 이진삼 · 이범래 · 김태원 · 김동철 · 원희룡 · 구분철 · 김소남 · 정병국 · 박종희 · 신상진 · 김희철 · 이달곤 · 정양석 · 김재윤 · 박상돈 · 이화수 · 김충조 · 강창일 · 신학용 · 조전혁 · 장광근 · 이성현 · 이운성 · 조영택 · 윤상현 · 고승덕 · 강명순 · 최인기 · 강성천 · 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38
19.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김재균 · 강창일 · 김영진 · 강기정 · 양승조 · 김춘진 · 우윤근 · 주승용 · 전현희 · 이광재 · 백원우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38
2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창일 ·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김창수 · 박지원 · 송민순 · 안민석 · 양승조 · 원혜영 · 이광재 · 이미경 · 이용경 · 이용섭 · 조배숙 · 천정배 · 최문순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38
2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유성엽 · 김재윤 · 강기갑 ·곽정숙 · 이정희 · 권영길 · 최문순 · 김성수 · 원혜영 · 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38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대해 · 박은수 · 전현희 · 문학진 · 변재일 · 이석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영진 · 최영희 · 천정배 · 송영길 · 홍희덕 · 강기정 · 이용경 · 장세환 · 김재윤 · 안규백 · 이성남 · 이춘석 · 원혜영 · 이정희 · 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38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 · 최구식 · 유재중 · 홍장표 · 안상수 · 강성천 · 손숙미 · 이달곤 · 홍희덕 · 박민식 · 서상기 · 황우여 · 김정훈 · 허태열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38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0시05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석면피해보상관련 제정법안에 관한 공청회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석면피해보상관련 제정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석면피해보상법안,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지난 3월 26일 제281회 국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고 앞으로 대체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청회는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 홍성, 충북 제천 등 석면광산지역의 토양과 대기에서 석면이 검출된바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관련 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석면 제조 과정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이러한 간접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가 없는 관계로 위 4건의 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 법률안들에 대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보상 범위나 그 수준, 재원 마련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유익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은 위 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이 추천한 네 분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해 주신 두 분 등 모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좌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부터 양승조 의원이 추천하신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박준선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권선택 의원님이 추천하신 김현욱 가톨릭대학교 의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님이 추천하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의대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법무법인 한강 박윤원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오른쪽으로부터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해 진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므로 진술인 상호간의 논쟁이나 질의 위원에 대한 되묻기식 발언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예용 앞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진술인 최예용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먼저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2, 3분 내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제 진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면, 석면특별법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석면의 환경성 노출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업적 피해이지만 기존의 산재보험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올해 1월 1일자로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

지되었지만 이번의 베이비파우더 파동과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건물 철거나 수많은 석면광산지역, 관련 제품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석면 노출자가 속속 확인되거나 노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피해가 2045년 또는 그 이후에야 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 추가되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성 석면 노출자들에게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하거나 석면 노출자 등록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려하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길게는 50년씩의 잠복기 동안의 그런 건강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제도가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요구가 추가로 또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는 악성중피종 및 폐암 등 석면 관련 질환의 정확한 파악과 개별 사안에 대한 노출평가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개인 정보 노출 제한으로 이런 조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이런 악성중피종의 발병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석면피해 규모를 나름대로 추산을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거친 추산이고 전문연구자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피종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석면을 200만 t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존 학계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할 때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석면폐암 즉 폐암인데 석면에 노출되어서 걸리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보상기준을 볼 때 중피종의 2배, 약 한 2만 4000명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페이지 보시면 석면폐와 흉막질환도 역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발병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산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현장인데요. 거기에서 저런 식으로 석면이 들어 있는 건물을 저렇

게 파괴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석면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석면 철거가 완벽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볼 때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노출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석면질환 발생을 나름대로 추산을 해 보면 중피종 암은 약 1만 2000명, 그리고 석면폐암은 그것의 2배, 그리고 석면진폐의 경우도 거의 1만 명, 흉막질환의 경우에는 거의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칠지만 추산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라는 연구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환자 약 칠팔십 명 정도를 추적을 해 봤더니 그중의 육십여%가 직업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일반 환경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직업성의 경우에는 저런 건축이나 건설, 자동차, 석면방직공장, 조선소 용접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직업에는 사무직, 경찰, 교사, 농업종사자, 전혀 석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리고 석면광산에 살던 사람들, 자가 건축한 그런 사람들, 재건축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2006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됐지만 2006년 8월 현재 노동부가 허가한 석면제조사업장이 저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국가가 석면지도를 통해서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건강을 추적조사 해야 됩니다.

가정용품의 석면사용 실태에서도 전체의 약 14%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체 어떤 제품에 어떤 용도로 어떤 종류의 석면이 사용됐고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석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저렇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석면의 경우에는 채광, 제조, 사용, 폐기 이 전 과정에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주

민들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 작업장의 20%에서 주변환경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에도 석면 뿜칠이 많이 사용이 돼 있고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것처럼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 60년대 70년대 석면 사용이 피크를 이루었지만 긴 잠복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석면 피해가 최고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년이나 2050년이 돼야 그 피해가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석면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네 종류의 주요 석면질환의 경우 잠복기가 저렇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노출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특히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흡연에 노출이 되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고 50배까지 폐암 발병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작년의 국정감사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셨던 재개발 지역에 사시던 그분의 악성중피종 관련 사실을 잠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노출된 지 최대 20여 년이 지나고 중피종에 걸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지역의 주택밀실 연도별 현황입니다. 저렇게 급속도로 주택을 밀실하는 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수만 가구, 4만, 5만 가구씩 저렇게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안전한 석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부산 석면지도,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석면방직공장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80%, 90%씩 석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 부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입니다.

저는 환경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적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물론 국가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는 별로론 하더라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생존권, 환경권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로 하여금 석면 피해에 대한 특별법을 통한 구제체도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필요성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피해구제 상황을 볼 때 석면피해가 원활히 구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책에는 개별적인 구제조치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구제조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도 계속적인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회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가 구제대상이나 대상질병이나 구제범위, 재원마련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8페이지에 구제대상과 관련해서 4개 법안 모두 직업성 노출, 그러니까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직업성 노출 플러스 환경성 노출까지 구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면 가능한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박준선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의 경우는 가정 내 노출, 그러니까 근로자가 집에 가지고 온 마스크라든지 작업복에 묻어 있는 석면이 비산해서 가정에서 노출되는 경우까지는 포섭하지 못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 내 노출까지도 포섭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양승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정질환 발병 환자의 경우 20년의 기간으로 기한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석면 관련 질환, 아까 봤지만 4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 자체를 구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 수급을 받는 데 기존에 지적되고 있는 어려움들이 개정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질환의 경우에도 각 법안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 석면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구제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고 반면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폐암과 악성중피종만 대상질환으로 인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충실한 구제를 따진다면 프랑스와 같은 방식이 좋겠지만 만약에 기술상의 이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한다면 지정질환을 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폐암이라든지 악성중피종과 같은 석면과의 관련성이 아주 높고 또 그 예후가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지정질환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석면에서 기인한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면서 우선 법률에서는 악성중피종, 폐암, 그 밖에 석면에 기인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정도로 규정하고 향후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그 지급기준이나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구제범위와 관련해서도 4개 법안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구제범위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재원을 얼마나 많이 조성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안이 옳다 그르다고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의료비라든지 요양비용, 장의비 정도는 지급되는 게 최소한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양비용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나 이런 질병의 예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뒤서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양승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상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법안에서는 다 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안의 주된 포커스가 환경성 노출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법상의 기본적인 법원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성 노출과 관련해서는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4개 법안을 보면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준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정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원인자책임원칙의 취지를 살리는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나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기부금 이런 것들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석면 자체가 잠복기간이라든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가해자를 확인하고 특

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원인자책임원칙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자책임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가, 거의 모든 국민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 마련에 있어서 가능한 석면피해 구제에 어느 정도 가담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석면 생산 과정에서 석면 노출이 있을 수 있고, 가공·제조단계 사용·소비단계 폐기물 처리하는 단계 또 석면폐기물이나 석면제품을 운송하는 단계 이런 각 단계에서 석면 노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석면 노출이라는 것은 과거 석면의 유용성에서 비롯되는 석면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국가 역시 이러한 석면의 전 과정에 대해서 법제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관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는 과거의 석면 사용량이라든지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석면 피해가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만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수익자로서의 국민 전체의 부담이 고려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자들의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의대 김현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현욱** 가톨릭대학교의 김현욱입니다.

3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법률이 제정되게 된 기회가 마련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금년

초 광산 주변의 주민 석면 피해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당시에 광산 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연구원으로서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에 대한 실태를 먼저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70년대의 산업화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등이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으로 시행된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의 초가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교체되는 정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석면광산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면광산은 일제시대에 군수용으로 개발돼서 충남 홍성 광천과 보령에서 광산을 개발했는데 이 석면을 생산, 가공,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면광산에 종사했던 분들하고 석면광산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앞서 여러 진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석면 관련 질환은 주로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간 이후에 발생하는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혹 장 관계 암이라든지 후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석면 관련 질병들은 대부분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매년 평균 약 8만t 정도의 원료를 수입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 자재,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가스켓, 석면포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됐는데 한 80% 정도가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석면의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하고 있지만 원재료가 아닌 제품에 섞여 있는 경우 아직도 수입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면 공장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15개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향후 대체품을 생산한다든지 폐업 또는 국외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석면 관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은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해체 제거되면서,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내부구조 변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향후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점차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석면 해체 제거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앞서 슬라이드로 본 예측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런 작업이 제정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산은 폐광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완벽한 복원이 돼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주변 임야나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석면 피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일부 안에서는 직업성과 환경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악성종괴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이라든가 석면폐증, 그리고 흉막비후 이 질병들은 일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폐증 같은 경우는 거의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은 우리나라 흥성 광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광산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석면폐증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폐암의 경우도 석면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폐암 발생이 과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른 적용기준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흉막비후라든가 흉막반 정도는 석면 노출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만 이 경우 기능성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에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석면에 대한 질병과 인과관계 및 의학 적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석면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의학적인 판단기준을 심의할 전문위원회하고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판정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구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지붕개량사업처럼 강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석면을 생산했거나 수입한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데 다만 석면 생산이나 수입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미 폐업한 업주라든지 다른 대체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제조물 피해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도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은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성격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석면센터와 같은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석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반드시 사후에 폐를 기증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폐조직을 보관해서 추후에 질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폐조직 뱅크를 설치하는 규정도 반드시 삽입되어서 향후 질병 예방과 연구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별도의 의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원입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원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토양에 대한 오염이 됐을 경우 이 토양에 대한 것이 만약에 농경지나 목축지라

면 이런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이라든지 토지 매입·복원 등이 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도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석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탄생하기를 바라며 적절한 보상과 향후에 석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자세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상혁** 소개받은 임상혁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석면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국 석면 피해자 그 테이블(table)을 보시면 보상제도에서 일본·프랑스·네덜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일본은 중간형, 프랑스는 고급형, 네덜란드는 기본형 그래서 마치 일본 정도의 보상제도가 중간쯤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일본의 보상제도는 입법취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상제도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민법상의 책임과 분리하자, 그리고 사업주 및 국가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제도가 아니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사망을 하였던 사망하지 않았건 환경성이건 직업성이건 1인당 약 3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국가나 사업장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네덜란드를 기본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산재보험제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유럽의 아주 복지가 발달된 국가는, 스웨덴이나 네덜

란드 이런 국가는 산재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피종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이 소송을 통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좀 해 주자 그런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보상을 해 주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면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뭐냐 하면 모든 사회보험을 다 받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받는 보험입니다. 그런 형식이 바로 프랑스에서의 사회보장 형식,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고 그 인정에서 조금 더 초과되는 부가,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정도를 부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석면에 관련된 보상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국가를 모델로 하는 것은 어찌면…… 우리가 물론 보상의 원칙을 정해야 되겠지만 이걸 고급·중급·저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4개 법안을 검토해 보면, 지원 대상에서 보면 전부 다 비직업적인 노출 피해자와 직업적 노출 피해자 중에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해자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 질병에서 보면 오해하실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 질환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 질환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판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석면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판정되는 겁니다. 법안에 질병명이 써 있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도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폐암이라고 신청을 해도 그건 심사를 해서 인정 여부를 가리게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질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후두암이고 하나는 흉막질환입니다.

이미 후두암 같은 경우는 보상 질병에서 보시면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면의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막질환도, 아까 김현욱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적 손상이 있는 흉막

반 같은 경우도 역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인정 범위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기존의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면 현재 산재보험 인정기준에서 흉막반이나 후두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행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준용할 수는 있지만 산재보험 인정기준도 역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본 법안도 개정되어야 될 거다 이런 거고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또는 요양에 관련해서 들어갔던 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요양급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급여 또는 휴업급여, 급여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급여가 포함되어야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처럼 아주 적은 액수의 구제 이런 것들은 또다시 굉장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산재보험에서 통상임금의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정도의 보상제도가 아마 우리나라 다른 사회보험의 형평성과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제기구는 본 법안의 주무 부서를 환경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보통 기금을 운용하려면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처럼 별도로 독립된 기구, 공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 피해자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라든지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참여해서 의결하는 의결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예방사업을 주로 하는 기구도 이 기금공단에

서 보상과 예방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체계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해서 예방기구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공단의 산하기관이 돼서 예방과 보상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단 설립이 상당히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자체에서 고용보험처럼 기금을 직접 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도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정 주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도 독립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관정에 대한 절차나 방식에도 환경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정위원회가 공단에 있다면 불복절차 기구는 환경부에 둔다든지 이렇게 불복절차 기구와 관정위원회 간에 소속이 좀 달라서 서로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식이 관정 주체와 불복절차 기구에 포함되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확보 방안에서 보면 원인자 책임 원칙을 준용하자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자들이 대부분 폐업했거나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재보험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정 정도의 많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산재보험에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나 지자체에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재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재원 출연은 30%를 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재원을 만들고 걷고 이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논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처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먼저 기금을 조성하고 나중에 사업주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먼저 조성되고 그것으로 예방이나 보상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원인자에서 그 보험비용을 받아서 정산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사업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의 빠진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반 국민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예방사업에 또 하나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적시하지 못했지만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라는 원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전염병관리법처럼 이걸 진단한 병원에서 환경부의 이런 기구를 통해서 등록시키는 등록제로 한다면 여러 가지 조사·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의대 김동일 교수님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동일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산업의학과 김동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석면구제법의 필요성을 앞부분에 말씀드리고 현재 한국의 석면구제법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구제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석면은 굉장히 긴 잠복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몇 명 있느냐 하면 한 170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노출되었느냐 하니까 1960년대 말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992년에 우리나라의 석면 수입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32년쯤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석면구제법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환자 발생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산재보험의 제한적 인정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은 원래 일반 국민들의 질병이 아니고 석면을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질병입니다. 즉 석면의 질병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진폐증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석면은 진폐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환자가 1년에 70명씩, 즉 2년을 산다 그러면 한 15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석면 인정기준이 매우 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구제법을 만들 때 이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석면에 의한 민사소송이 증가될 건데,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원래 석면은 건축자재에 사용하기 이전에 군수물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 미국 정부가 석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를 납품받지 않을 정도로 석면이 아주 배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물론 광산 인근지역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닷가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석면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유럽에서 이전에 조선공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면에 의한 질병 이라면 악성중피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서울 지하철역이나 지금 조사되고 있는 홍천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의 건강평가에서 악성중피종은 단 1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악성중피종을 발견 못 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구제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질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석면구제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악성중피종 이외에 흉막의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폐를 싸고 있는 막을 흉막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악성중피종이 1명 발생되면 흉막의 질환은 10명에서 10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제법을 만들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는 것은 악성중피종 환자들이 구제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흉막의 질병을 앓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석면에 의한 흉막의 질환은 사망이나 또는 고통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쉽게 말하면 암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한 질병으로서 법적으로 보상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흉막의 질병을 보상하지 않는 구제법이 탄생이 된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환자의 98%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흉막의 질병을 구제법에서 인정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소송 문제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접피해 보상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간접피해라고 그러면 석면이 휘날리는 그 인근 지역의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즉 광산 주민이나 조선소 인근 주민들, 석면공장의 인근 주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제법이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해서 한번 폭파해서 날리는 석면, 또는 석면탈크, 학교 운동장의 석면, 석면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발병 경로에 대해서 완전히, 또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보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의 국제적 형평성에 있어서 보상법을 어떠한 형태든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 4개국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만든다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보상제도를 만드는 나라이며 벨기에가 2007년 12월 1일에 구제법이 가장 맨 나중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2007년 12월 보상 질병을 보면 완전히 산재기금에서 돈을 냈고 보상 질병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에 국한되었습니다. 흉막 질환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는데 악성중피종보다 더 심각한 흉막 질환에 한해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보상받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는 직업·환경성 질환으로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하지만 현대 의학이나 현대 과학적으로 원인관계, 즉 당신의 회사가 인근의 주민들한테 석면을 휘날리게 해서 환자들한테 석면 피해를 입혔다고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30~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폐 속에는 석면이 약간씩, 전부 다 부검을 하면 다 나옵니다. 왜? 도심의 공기 중에는 석면이 다 날리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구제법 제언에서 석면구제법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가, 석면피해 보상 대상자는 누구를 해야 되는가, 석면에 의한 질병의 범위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석면 보상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진술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였고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요약하자 그러면 1차적으로 구제법이 마련되다 하더라도 악성중피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상이 국한되어야 하며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지정질

병으로 지정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인 경우에 보상보험법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한강의 박윤원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윤원** 앞의 발표자 분들께서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가지고 법률 실무자로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많이 언급이 되는데 과연 이 법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소송을 통한 사회적 소모적 비용이 없어질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전제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재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데 외국 사례,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진폐법을 기본 틀로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진폐법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재산적 손해, 즉 위로금,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산재법에 의하면 위로금 부분은 없는데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로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 소액을 가지고 이중적인 법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법에 의해서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소송을 통한 절차가 중단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일본, 프랑스, 미국에 나왔던 입법안도 그렇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진폐법에 의하면 장에 위로금이나 유족 위로금을 신청을 하면 그것은 위로금에 대해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중의 소송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예 법안에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위로금

부분이 그렇게 상당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반영이 되어도 재원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인데요,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책임자,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산업체 사업주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되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07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석면제품 제조·수입 사용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가 되고 있는데 재원 부담을 과연 소급을 시켜서 과거 원인부담자들에게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사 사업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향후 이 법이 발효될 시점에서 그 사업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가 입법 과정에서도 미리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은 나왔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소송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요,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나 보험사들한테 재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더 패널티를 부과해 가지고 가산된 출연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법안 취지에 동의를 하고 지금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성 노출 부분은 말했던 것처럼 산재보험법이나 진폐법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처럼 충청남도 석면폐광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환경성 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첨언을 한다면 최근에 석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나 의약품, 화장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엄격하게는 환경성 노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4가지 입법 중 하나에는 분명히 이런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석면 피해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베이비파우더를 쓰고 의약품을 써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위로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 이런 문제들이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었는데 이 분쟁이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보호원, 아니면 민사소송 또는 식약청에서 판매 금지 회수 조치를 통해서 각각의 소관 부처 관련자들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 중에는 관련 기구, 전담 기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석면 관련 잠재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품을 리콜한다든가 적당한 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담적인 권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상질병으로 법에서 예정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 하부 시행령에서 나머지 세부 질병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예 법에 없고 시행령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석면 관련 질환자들 흉막비후나 석면폐증 같은 경우는 전문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받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따지면 본안전 각하와 같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예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 질병은 다각적으로 폭넓게 예시를 하고 어차피 구체적인 판정은 전문 위원회에서 의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으로는 폭넓은 보상 질병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보험법 아니면 다른 법 그리고 소송 등을 통해서 보완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있는데 특히 충청도 석면폐광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이신 농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나 생활급여 같은 것을 설사 인정받아서 받는다 하더라도

도 솔직히 명목적인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산재법에 근거하더라도 만약에 사망하셨을 때 생활급여, 장애급여가 1000여 만 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명목적인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향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도 마을을 가 보면 한국광해공단에서 나와서 복구 작업을, 흙을 갖다가 메우는 작업 정도를 단순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복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막대한 예산이 그 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자한테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인 피해 구제 사업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중할 수 있도록 이런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씩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박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베이비파우더, 또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의 발생 이전에도 석면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석면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석면법 관련 공청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쓰자는 정부와 국회의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공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먼저 박종원 연구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박 연구위원님은 석면 피해 구제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노출 경로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제 대상의 범위가 무작정 무한정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석면 관련 산업 근로자가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출퇴근 시 이동하는 길이나 대중교통에서 노출된 불특정 다수도 구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박종원** 바로 답변 드리면 됩니까?

○**박대해 위원** 예.

○**진술인 박종원** 저는 일단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공정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출경로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에서 노출경로를 따지지 않고 다 포함시키는 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산재보험법에서 직업성 노출자에 대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환경성 노출자, 그러니까 비직업성 노출자를 특별법에 담는 안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인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과의 관련성이 8, 90%에 이르기 때문에 구제법에 따라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폐암이나 석면피해 같은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직업 기준에 따라서 구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또 피해보상의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물론 양쪽 다 보상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 박종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재원 조성 규모라든지 향후 피해 상황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인자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이용자나 수익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아까 제시를 하였고 또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자가 공사품목의 재질을 일일이 감독,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

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하나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진술인 박종원 제가 원인자책임원칙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법안들이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최소한도의 존중이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수익자나 이용자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국민 전체가 수익을 얻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 부담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교수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동일 교수님은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해 권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직업성 발병의 경우 산재로 보상을 받고 환경성 발병의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석면 피해자가 총 약 한 1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피해자별로 증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제정규모로 다소 무리가 분명히 따릅니다만 프랑스식의 완전구제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석면 피해자도 있지만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보시지요.

○진술인 김동일 제가 제작년에 프랑스의 석면구제 FIVA를 방문했을 때 당시 FIVA의 보상이 이미 된 사람들의 대부분, 93%는 직업관련성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구제법의. 그 외에 비직업성 환경노출자는 전체 구제 대상된 사람들의 약 한 7%였고 그 7% 중에 한 절반은 순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성, 나머지는 직업 관련 또는 어떤 노출의 관련성이 아주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법이 된다 하더라도 순

수 시민들에게 발병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16만 명이라는 그 근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대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석면피해심의위원회 도입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석면피해심의위원회를 의학적 판단을 할 전문위원회하고 또 보상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심의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석면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결국 의학적 견해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보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피해 진단하고 보상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진단과 보상 심의는 구태여 위원회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술인 김현욱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흥성 광천하고 보령 쪽에 의학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의학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CT라든지, 주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그것을 필름을 판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적일 때 다시 CT를 찍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영상의학 전문하시는 분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것하고 보상을 제가 분리 말씀드린 것은 의학적인 진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하는, 보상이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질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대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예용 소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지방노동청이 삼성본관 주변의 석면 먼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최예용 예,

○**박대해 위원** 당시 최 소장님은 삼성본관 주변 석면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술인 최예용** 예.

○**박대해 위원** 삼성본관의 석면 검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진술인 최예용**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 소장님께서서는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김상희 의원님 안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김상희 의원님 법안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석면전문기관인 국립석면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했는데, 그렇지요? 석면전문가를 고용하고 또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연구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진술인 최예용** 먼저 삼성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 준 바가 있고요. 노동부에서 특별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몇분의 진술인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해자원칙,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그동안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고 아까 비디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기업 때문에, 특정한 제품 때문에만 노출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통해서 PPP, 그러니까 오염자부담원칙이 기본적으로 70% 정도 적용이 되고 나머지 30%는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다만 거기에서 광산과 같이 과거에 이미 사라진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상희 위원님 순서가 되겠

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술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히 제가 오늘 진술인들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지금 네 의원께서 내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을 제출할 때는 주로 환경 피해라든가 지역의 피해 그리고 사업장의 피해에 한정돼 있을 때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활용품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저희가 낸, 제가 낸 법안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인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보면 주로 저희들이 낸 법안을 중심으로 진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들이 충분치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법안과 무관하게, 저희가 낸 법안과 무관하게 의견을 좀더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안을 제출했을 때는 주로 사업장의 피해는 노동부 그리고 환경 피해는 환경부 이렇게 분류해서 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사업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두 주무부처뿐만이 아니라 복지부라든가 지경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다양한 부처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들의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통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들이 석면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예방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와 관련된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도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술인들께서 보완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용 부소장께서는 특히 국가석면정책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최예용** 두 번째 말씀하신 석면정책협의회에 이번에 베이비파우더 파동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몇 개 부처가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관계부처에 계신 분들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주관 을 해 가지고 여러 부처가 모이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이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이 나오 고, 그것도 안 나오거나 돌아가면서 나오고, 또 이것을 환경부는 제대로 내용 있게 끌고 가고 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게 작년 에, 제작년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파우더 문 제라든지 제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 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5개, 6개, 7, 8개의 부처가 같이 참여하 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쉽게도 환경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판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리실 산하에 석면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특별기 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다 격상을 높여서 그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베이비파우더 문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맞습 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아주 제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바로 7페이지에 말씀드렸던 석면건강 수첩을 발급하거나 또는 석면노출자를 등록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긴 3, 40년의 잠복기 동안에 노출된 사람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어떤 측면에서는 달래 주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그분들의 검진과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런 법안에 도입을 한다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특별히 하 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술인 박종원**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 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은 아 마도 석면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의 단계, 과거에 석면에 노출된 점으로 인해서 피해 는 지금 발생하는 이런 피해를 이제 국가적 차원

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구제해 주자 이런 취 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품에서 석면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 구제 부분은 또 다 른 법적인 이론의 바탕하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상희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욱 교 수님?

○**진술인 김현욱**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생활 용품 등에 들어가 있는 석면으로 인한 이러한 것 들에 대해서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생활용품 중에 석면 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생활용 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유해 성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거 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생활용품을 사용하면 서 발생하는 석면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폐기물로 해서 반출 될 때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부처가 책임 을 져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 도 석면정책협의회의 원년 멤버부터 지금까지 계 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야 베이비 파우더 사건 이후로 몇 개 부처가 더 들어와 있 고요.

대신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들이 있고 잘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과 위 있는 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무 부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임상혁 선생님한테도 물겠는데 요.

지금 생활용품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의 경우 에는 뭘 주의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 석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전 부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며,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지금 베이비파 우더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자동차, 냉장고, 가전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생활용품에? 그래서 생활용품에 도대체 어디까지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기 집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 터뜨려지는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계속 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더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시급한 연구,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당장이라도 뭔가 상담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디에 다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각 부처들이 함께 이런 소비자생활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상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임상혁**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석면에 의한 노출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업적인 노출 또는 환경적인 노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반 국민에 대한 노출 이렇게 나왔는데 노출의 정도들이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느 것이 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똑같이 다 위험한 것처럼 다루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대책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뭘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책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 제일 간단한 게 버스나 트럭, 오래된 차들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국가에서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 대책들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또 정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김동일 교수님!

○진술인 **김동일** 예.

○조해진 위원 제가 발제하실 때 못 들어서 그런데, 대체로 구제 대상 질병에 악성중피종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그건 이견이 없으신 것 같

고, 나머지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폐암, 석면폐증, 후두암, 흉막반 이런 나머지 질병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동일** 많은 질병을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 국가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주 어렵게 어렵게 심사를 한다 그러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석면구제법의 도입 배경에 있어서 선진 여러 국가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악성중피종에 걸리면 이전에는 6개월, 지금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빠른 구제절차를 하기 위해서 구제법이라는 게 사실을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중피종은 명확하고 석면 피해는 굉장히 희귀하지만 석면에 의한 질병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석면폐는 쉽게 말하면 1단계부터 10단계 석면폐까지 범위가 굉장히 큼니다. 석면폐가 관찮은 석면폐, 내일 죽을 석면폐 이렇게 때문에 석면폐도 그러한 경중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폐암은 불행하게도 의학적으로는 석면에 의한 폐암인지 담배 피서 생긴 폐암인지 라돈에 의한 폐암인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당신은 폐암인데 석면광산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폐암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그 외에 흉막의 질환은 이러한 질병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에서 100배나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결핵이 많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악성중피종에 국한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나머지 질병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기능상 장애가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은 별도로 또 검사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진술인 **김동일**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은 의학기술상의 문제보다는 구제정책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나

기능의 저하 문제나 이런 걸 규명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구제, 피해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지요?

○진술인 김동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악성중피종은 그냥 보상을 해 주면 되고, 폐암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폐암은 악성중피종의 발병률보다 100배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석면에 의한 암이다 이러면 지금 현재 폐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법에서는 광산지역의 반경 1km 이내에 1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중에서 폐암이 발생하면 구제를 해 준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프랑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km이고 일본인 경우에는 1km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석면피해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일본은 석면피해를 굉장히 박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근거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조해진 위원 환경부 실장님, 환경부에서 3월부터 홍성하고 보령 지역 주민 건강검진하고 건강영향조사를 죽 해 오고 계신 겁니까?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끝났습니까?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예, 그렇습니다. 곧 정리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을 직접 피해보상 말고…… 박종원 연구위원님한테 여쭙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여기 법안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는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박종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는 안 했고 깊이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이 법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원 조성 부분만 문제없다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해진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진술인 박종원 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건

강……

○조해진 위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질병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진술인 박종원 지역숙원사업?

○조해진 위원 예, 그것하고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

○진술인 박종원 그것은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타당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민건강 증진사업, 건강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해진 위원 예.

임상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임상혁 다른 나라의 법안에서도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석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석면의 피해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해진 위원 사업주의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은 강제성이 없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임상혁 강제성을 당연히 부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기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되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부담 이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제 생각에는 7 대 3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7 대 3이요?

○진술인 임상혁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오래 전에 폐업했거나 또 관계자들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진술인 임상혁 굉장히 영세한 기업조차도 우선부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처럼 그런 기업에 대한 예들을 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을 몇 만 톤 이상 수입한 사업장 이런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남아 있거든요. 아니면 환자가 몇 명 발생한 사

업장, 이런 식으로 제조와 사용에 대한 사업장들은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사업장들, 석면 제품들을 사용했고 그런 것들을 제조하거나 사용했거나 그런 데 관여했었던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재보험기금에서 일정 정도의 각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들을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해진 위원** 김동일 교수님,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 아주 화제가 됐던 베이비파우더나 먹는 의약품의 석면 함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동일** 석면의 인체 침입 경로는 호흡기를 통해서입니다. 석면에 의해 접촉성 피부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의 성립의 전제요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인간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만 하더라도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석면은 알려진 것과 반대로 접촉성 피부염을 잘 안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석면가루를 가지고 제 얼굴에 비볐을 때하고 크롬이나 카드뮴 가루를 가지고 제 얼굴에 비볐을 때 오히려 크롬이나 카드뮴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더 많이 나지, 석면은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석면은 그 자체의 물리적인 고유한 성분 때문에 건축자재로 이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금술을 마시면 100% 대변으로 다 빠져나오는 것과 같이……

○**조해진 위원** 금술?

○**진술인 김동일** 술병에 들어 있는 금가루를 저희들이 마시지 않습니까?

○**조해진 위원** 예.

○**진술인 김동일** 금가루가 마치 좋은 것 같은데 금은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통해서 석면이 포함돼 있는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대부분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쥐 실험에서 일부 박혀서 발생이 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발생이 안 된다는 보고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킨다든지 또 소화기를 통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고 국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함

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싸여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해진 위원 질의 관련해서요, 아까 김현욱 교수님께서 영상의학자들도 판정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동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성중피종은 발견 즉시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악성중피종은 발견이 어렵습니까, 영상자료로 써도? 환자의 중피종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침, 가래상태, 또는 몸이 말라간다든지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 영상자료로 판독이 어렵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판독이 매우 매우 쉽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정도면 매우 쉬운데 그런 환자가 없습니다, 악성중피종 환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악성중피종 환자가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보면 금방 판독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악성중피종이 100만 명당 1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악성중피종 환자를 2명 본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자료로 판독이 어렵다 하는 것은 악성중피종 이외의 석면폐증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진술인 김현욱** 예,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홍성 광천 쪽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스크리닝 쪽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일단은 이상자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나오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수십 명씩 나오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프랑스 사레처럼 광산 반경 몇 km 이내에 폐암이 발생하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확률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산 인근 지대에는 폐암 발생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확률적으로 월등히 높든지 그런 것이 조사되었거나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입니까, 우리나라는?

○**진술인 김현욱**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산 주변을 조사한 것이, 광천의 경우 광산을 기점으로 해서 4km×4km 그다음에 보령의 경우에는 2km 반경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석면에 관련된 질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얼마로 한정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 조사가 있었습니까? 광산 인근 반경 해서 폐암 발병률이 월등히 높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사 사례가? 외국의 통계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술인 김현욱** 외국의 통계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사례로 나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까 최예용 부소장님이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는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비산 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쉽게 그렇게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서 건물을 폭파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현욱** 예.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광산뿐만 아니라 도심지는 거의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폐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석면 진원지에서 인근 몇 km 이렇게 정한다면 도심지는 거의 99% 100%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진술인 김현욱** 그래서 제 생각은 석면광산인 경우에 몇 km를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조사에 보면 어디에서는 1km에서 석면이 발생된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10km까지에서도 석면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한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최예용** 저도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진술인 최예용**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

본의 구보타나 지금 우리나라 부산으로 옮겨온 석면방직공장 인근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인근에 특히 구보타에는 몇백 명의 중피종 사망자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구보타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석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쪽에 보시면 새 걸로 갈았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아마도 국회에 오래 계신 분일수록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알기 어려우니까 불가지론이다 이렇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야지,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피종 외에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의료체계 속에서는요…… 위원님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최형식 선생님?

○**委員長 秋美愛** 예.

○**진술인 최예용** 그분이 중피종 환자인데요, 대학병원을 서너 곳을 다녔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 대학생이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진술인 임상혁**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보는 환자의 한 경우에도 모 대학병원에 두 달 정도 입원했다가 진단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피종이라는 진단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진단입니다. 아까 쉽게 진단이 됐다면 그건 중피종인지 아니면 다른 암이 중피에 전이된 건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암이어서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중피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있다면 지금 계속 증가하듯이 의사들의 진단율도 올라갈 거고 환자들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외국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실제로 폐암 같은 경우 이게 석면에 노출됐는지 안 노출됐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거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폐에서 석면과 관련된 흔적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석면폐가 있는지. 석면폐가 있는 사람한테 폐암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라고 생각을 해 주는 겁니다, 환경의 노출이건 직업의 노출이건. 두 번째로 흉막에서 석면으로 인한 흉막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동반한 폐암이라면 그것 역시 직업적이건 환경적이건 석면에 노출됐다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을 하면 폐의 건조폐 또는 폐의 g당 석면 파이버(fiber)가 몇 개가 발견되느냐,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적인 노출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또는 환경적인 노출에서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김현욱 교수님 발표 내용에도 있으셨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이 헬싱키에 모여서 헬싱키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줬고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직업성 또는 환경성을 어떻게 인정할까 하는 인정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폐암이 생겼다고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폐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석면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준들에 맞게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기준들은 대통령령이나 규칙, 이번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걸 통해서 완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해진 위원** 김동일 교수님 말씀은 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지금 임상혁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조해진 위원** 두 분은 아주 어렵다고 하였고, 김동일 교수님하고 완전히 의견이 다르신데요.

○**진술인 김동일** 두 분 말씀하시는 환자도 저도 다 봤는데 그것은 확증이 어렵다는 거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에는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질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1960년대 없어졌다가…… 말라리아를 본 의사가 대한민국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말라리아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말라리아가 뭐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한테 교육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너무 너무 진단이 쉽습니다. 3일 열나고 3일째 열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라리아라는 것을 의심을 못 하기 때문에 다 감기로 오인한 겁니다.

악성중피종을 자기 평생 본 의사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진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조직검사도 하고 이런 것은 다 한다는 거죠, 제가 본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걸 악성중피종이라고 의심을 못 하죠. 왜? 지금까지는 이런 석면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폐를 싸고 있는 막을 흉막이라 그러고 흉막은 막이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피입니다. 중피암 또는 중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피종은 전부 다 악성이라서 이름이 악성중피종인데 악성중피종은…… 중피라는 것은 폐에도 있고 복강에도 있고 남자의 정낭에도 있고 심장에도 중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말하면 폐의 악성중피종은 석면의 바늘 같은 가루가 들어와서 폐를 뚫고 막에 침착이 돼서, 그게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제 손바닥 만하게 이만하게 생깁니다.

우리가 폐에 병명을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5mm고 CT는 5mm 이하에서도 감별이 되는데 적어도 1cm 이상의 악성중피종을 감별 못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 의미는 즉 악성중피종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성중피종 환자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흉막에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제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하면 4년 전에는 악성중피종이라는 질병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폐암이예요. 폐의 암이지 악성중피종이라는 국제분류를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았습다. 또 5년 전 우리나라에는 석면의 악성중피종이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왜? 질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질병을 마치 많은 질병같이 진단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석면이 문제되고 이렇게 해서 가슴 사진의 어떤 덩어리가 5mm가 아니고 50cm보다 더 큰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의사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진술인 최예용** 환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진단을 못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면 문제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임상혁** 사실 확인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10년 전부터 중피종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2004년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많은 논문에 인용되고 있는 중피종 통계는 2002년도 2003년도의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종한데 5년 전에도 중피종은 다 진단이 됐고 그런 통계들도 국립암센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또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협력해 주신 토론자들에게 여쭙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희덕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홍희덕 위원입니다.

오늘 요즘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석면 문제에 대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많은 발제를 해주신 여섯 분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방금도 발제자 분들께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석면질환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법안에 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농촌 지붕개량이라든지 또 방금 처음 시작할 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폭발 현장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왕에 법률에 담으려면 질병의 폭을 상당히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후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들 또 소장님들 정확하게 많은 의견들을 했는데요, 후두암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 법안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담겨져 있습니다.

임상혁 소장님 견해로는 후두암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최예용 부소장님은 난소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난소암도 외국에서 석면질환으로 많이 인정하

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술인 최예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탈크의 경우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탈크를 그룹1로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그것이 석면형 파이버를 포함하는 1급 발암물질인데 그 이후로 금방 말씀하신 여성들의 회음부에 그런 석면형 파이버가 포함된 탈크를 사용하면 난소암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인용을 하면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질병을 법안에 담을 때 어디까지, 부소장님께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 최예용** 저보다 여기 의학자들이 많으시니까 하기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피종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폐암은 석면 말고도 흡연이라든지 다른 여러 종류의 원인물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고 그 중에서도 남녀 공히 폐암이 1위입니다.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에 의한 것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뺀다거나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를 뺀다면 그것이 의학적인 기술적 한계인지 사회적 한계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면특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안전장치를, 석면이라는 위험한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허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와 의학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석면폐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광산 지역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석면을 원료로 다루는 공장 인근에 사시는 분이 폐암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노출 정황 증거가 정확하게 있다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막반의 경우도 석면에 노출된 증거인데 이것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다른 병과의 관련성 그리고 기능적으로 호흡기능이 떨어

진다든지 이런다면 그것이 폐암이나 암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큰 차이는 보이지만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예용 부소장님은 우리 민주노동당이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철거 현장을 한번 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둘러본 철거 현장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최예용** 앞서 동영상으로 제 말씀을 사실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출근시간대에도 또는 퇴근시간대에도 그런 현장을 지나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대규모로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비록 석면의 대기 중 농도는 상당히 낮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지역 주변의 10곳 중 2곳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희덕 위원**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철거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나 이틀도 상관없겠죠. 일제히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서울시나 환경부 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재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 실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아까 화면도 보셨잖아요? 그런 철거 과정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환경부가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의 석면 비산 문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낙 건축물 철거에 따른 제도와 관련 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전이라도 석면이 비산했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또는 건축 철거자들이 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물론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나중에 제도가 되면……

○**홍희덕 위원**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런 철거 과정에 법률을 삽입해야 되겠네요?

○**환경부환경정책실장 홍준석**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금년 6월까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는 박윤원 변호사님. 석면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의약품 등 생활용품 피해 발생은 직접적으로 없다 그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결같이, 기왕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생활용품에 대한 것들도 이번 법률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박윤원** 앞서서 김상희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 내용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석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가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 그리고 환경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 법령마다 환경이나 인테리어 이런 소재에서 석면 소재의 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석면 검출된 의약품이나 베이비파우더나 유해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법안들 중에서 전담기구이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이 법안에서 좀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 본다면 베이비파우더 같은 경우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환불 받는 이 정도이고, 그리고 또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또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걸쳐서 그럴 게 아니라 전담기구에서 리콜

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지 않는 조정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더 좋은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화수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 진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일 교수님, 우리나라에 석면구제법이 만들어지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예.

○**李和洙 委員** 미국은 석면사용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에 구제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진술인 김동일** 몇 번 시도가 있었고 연방법으로 국가석면법안을 상정했었는데 지금 아직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석면구제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최예용 부소장님이나 임상혁 소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예용 부소장님!

○**진술인 최예용** 예.

○**李和洙 委員** 작년에도 국감 때 나오셨었지요?

○**진술인 최예용** 예.

○**李和洙 委員**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석면 대체물로 글라스울이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라스울은 이런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진술인 최예용** 제가 알기로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다만 유리섬유도 안전한 대체제는 아니라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또 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사한 질환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지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재로서 유리섬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면이랄지 세라믹이랄지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한 대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아니, 암면이나 석면이나 똑같은 제품 아니에요?

○**진술인 최예용** 아닙니다.

암면과 석면은 독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게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 같은 게 없습니까?

○**진술인 최예용** 그것은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서 WHO의 IARC이라고 하는 국제암연구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다 없다, 특히 피부트러블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유리섬유에는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和洙 委員** 외국 연구기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유리섬유도 조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현욱 교수님, 석면함유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술인 김현욱** 예.

○**李和洙 委員** 수입하는 것 말고도 70년대 80년대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예용 부소장님은 이 천장재에서도 석면이 많이 함유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도 대기업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현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석면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국외로 가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든지 대체재를 생산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석면제품을 수입하는 곳은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는데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내에

석면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는 금년도부터 석면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석면사용이라든가 생산하는 것은 급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사용한 실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李和洙 委員** 그러면 금번에 베이비파우더다, 아니면 오늘 뉴스에는 썬베이스에서도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인체에 미미한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석면이 함유됐다 하는 것으로 아예 발표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현욱**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면을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 제품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을 검사해서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수입업자들이 애초부터 수입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서 그쪽에서 석면이 섞여 있는 것들은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 제품에 석면이 함유돼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리고 교수님이 흉막비후와 흉막반에 대해서 기능성 손실을 동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흉막비후와 흉막반의 경우 인과관계 규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어느 정도 힘든지, 지금 진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견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술인 김현욱** 그런 흉막반이나 흉막비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엑스레이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고, 대신 대부분 그 전에 석면에 관련된 노출력이 있는지—노출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과 엑스레이상에 나타난 소견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흉막반 같은 경우는 노출력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지는데 대신 그것이 기능적인 손상을 동반하지 않고 나타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를 보상해 줄까 하는 것은 기능적인 손상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李和洙 委員** 의학적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진술인 김현욱**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의학전문의들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연구에서도 보면 두 전문의 간에 너무 차이가 심해서 심지어는 저희 연구원이 그 필름을 들고 일본에 있는 전문의한테 가서 조언을 얻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박윤원 변호사님!

○**진술인 박윤원** 예.

○**李和洙 委員**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서 석면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판정될 것이므로 보상질병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모든 질병에 대해 보상한다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박윤원**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일단 앞선 진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차문하고 싶은데요, 흉막반이나 석면폐증이 몇 % 정도 영상소견이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폐 관련 특별법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그 보상기준이 심폐기능, 그리고 환기호흡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이것으로 해서 의

학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폐법에 의해서도 현재 영상으로만 잡히면 설사 심폐기능 저하가 없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급수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입법도 진폐법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그 부분은 설사 석면폐증, 흉막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급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그 증상들이 일단 요양급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게요, 정기적 검사 이외에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 치료를 해서 크게 호전시킬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양급여가 적게 들고, 장해급수 자체도 거의 하위수준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장해급어나 생활급여 부분에서 거의 미흡한 수준에서 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재정부담해서,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이상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재윤** 이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면에 대한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예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우리가 석면의 피해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우리가 제정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석면의 위험성이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오늘 법을 만든 것은 사실은 이미 고칠 수 없는 병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국가가 보전해 주느냐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한 건데 오늘은 어쨌든 논의의 범위가 이런 석면피해가 이미 벌어진 분들에 대해 어떤 보상과 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정돼 있다는 것이 제 입장

입니다.

김동일 교수님!

○**진술인 김동일** 예.

○**박준선 위원** 김동일 교수님께서서는 석면의 전문가로서 석면의 피해나, 우리가 오늘 석면피해 보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석면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발병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진술인 김동일** 어렵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법률상 단정지어서 악성중피종이라고 1개만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그런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아예 추상적으로 석면의 피해로 인한 것을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게 맞을까요?

○**진술인 김동일** 글썽요, 어느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그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4개 국가에서는 본인이 피해보상을 요청할 때 내가 석면에 노출됐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합니다, 노출력을. 그래서 악성중피종하고 석면폐는 노출력을 특별히 개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외의 질환을 지정 질병으로 한다면 개인의 노출력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상해 주는 프랑스도 개인이 입증할 못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석면에 의한 폐암을 신청은 많이 하지만 대부분 다 거부당하는 게 본인이 입증할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증책임을 본인한테 맡기는 보상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정 질병을 좀 넓혀도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그러면 악성중피종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박윤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박윤원** 제 입장은 일단은 일본 사례를 검토했을 때 조금 폭넓게 법에서는 예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법해석 자체가 엄격하게 해서 일부 질환, 특히 흉막 관련 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석면폐가 배제되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 질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재해나 진폐 관련 부분을 보

더라도 일단 예시를 해 놓고 상당부분은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 보상 수준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지 않으니깐……

○박준선 위원 일용 석면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예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어떤 심사나 심사기구에 그것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진술인 박윤원 예, 그래서 지금 대충 예상 가능한 질환이 한 여섯 가지 되는데요. 그 정도는 적어도 예시를 해서 다른 보완작업 없이 검토가 될 수 있게 위원회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예용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최예용 부소장께서 석면추방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석면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기금 부담을 했을 경우에 기금이 어느 정도 견힐 것인가, 또는 부담이 가능한 기업들이 현재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최예용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 슬레이트를 만들었던 과거의 모 슬레이트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예도 있습니다. KCC라든지 벽산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최근 몇 년 사이 2005년 2006년 때에 노동부가 석면원료 사용을 허가한 사업장들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곳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박준선 위원 그러면 원인제공한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가 되겠네요.

○진술인 최예용 그렇지요. 왜냐면 다 국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거기는 나오거든요.

○박준선 위원 허락하거나 묵인하거나?

○진술인 최예용 그렇지요.

○박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업체라든가 또는 개발업자들, 이런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석면기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될 수 있겠네요?

(김재윤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술인 최예용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을 전체 총괄 기획하는 그런 부처에서 석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주의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 고맙습니다.

임상혁 교수님, 임상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산재대상이라든가 또는 진폐법 대상 외에 비대상들만 저는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임상혁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결국은 여기 여섯 분의 진술인 중에서 의견이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위로금이나 전액보상이나, 사회보장 정도 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재원 마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범제 정에다 둔 이유는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고 정말 다다익선으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일실이익까지 전부 다 배상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늘려가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최예용 위원장님께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연구센터를 만들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부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모든 기구라든가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문제를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그 파트에다가 집중시켜 버리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출발단계에서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늘려가고, 그 다음에 석면에 대한 법 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건데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법률적인·행정적인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로금이라든가 사실 조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국가의 어떤 의

무라든가 또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임상혁**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임상혁** 현재 4개의 법안에서 예산안을 추정하지를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위로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보상 해 줄 것이냐 이것은 법안의 취지에는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의 금액이 저의 판단에도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에 정하는 수준 정도만 하더라도 연령이 있고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서처럼 일시적으로 구제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상을 할 것인지, 그러면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보상,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이나 집행도 훨씬 더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준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강성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교수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자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가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 교수님들 얘기,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네 가지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돼서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산업전문 의사시지요?

○진술인 **김동일** 예.

○강성천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건수와 산재 인정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술인 **김동일** 환자는 대략 매년 한 70명 정

도 발생되고, 현재 있는 환자는 한 170명이고,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악성중피종인 경우에는 연간 한두 명 정도 됩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발표 내용 중에 악성중피종은 석면이 원인인 경우가 8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악성중피종이 산재 인정건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술인 **김동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악성중피종 환자들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이 오늘 발병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30년 내지 40년 전에 어떤 특정한 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만 산재성립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성립요건이 개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가정주부라든지 노출력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이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석면폐증,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하고 있지요?

○진술인 **김동일** 예.

○강성천 위원 악성중피종 환자의 산재인정 건수가 그렇게 낮다면 석면폐증이나 폐암환자가 석면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겠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 환자들도 다 같은 국민인데 산재로 인정이 안 되면 막대한 의료비를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김동일** 보상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없습니까?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재원 마련과는 다른 별도로 일단 국가가 국민보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동일** 국가도 이전에 이러한 사태를 그렇게 직시를 못 했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석면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든지 또 석면을 휘날리도록 방치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천 위원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석면으

로 인한 질병으로 지정하는 질환이 일본은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로 인한 폐암이고 프랑스는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모든 석면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악성중피종에 의한 피해보상을 하고 있죠?

○진술인 김동일 예.

○강성천 위원 교수님께서는 석면피해 보상의 질병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진술인 김동일 저는 악성중피종과 노출력이 인정이 되는 석면에 의한 폐증까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톨릭의대 김현욱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의 질병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김현욱 저는 석면에 노출돼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서 악성중피종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석면폐증도 나오기 때문에 석면폐증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폐암의 경우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폐암의 경우는 다양하게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석면노출력에 대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흉막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하는데 대신 이런 경우는 기능적 손실이 있을 경우에 같이 보상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교수님께서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 및 의학적 판정을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죠?

○진술인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무인력과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술인 김현욱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학적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업의학전문의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영상의학전문의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이 경우에 한해서 얼마만큼 트레이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그마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 충분히 그 인프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석면피해보상법안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욱 예,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상세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지속적인 주민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진술인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악성중피종 중 석면으로 인한 질병 관련 정부 통계 관리가 제각각인데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자는 통계청,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진술인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도보완 차원에서 아까 최예용 환경연합 부대표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현욱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제도보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환경부의 용역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신 분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술인 김현욱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연구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진행을 해서 2003년도에 노동부에서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기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나라 석면이 수입 사용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환경부 용역으로 해서 광산 쪽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석면에 관련돼서 종합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부처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석면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한시라도 빨리 입법이 돼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원 박사님, 악성중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긴 반면에 발생 시 대부분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점에서 구제 급여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제전문

가인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박종원 저는 아직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어떤 석면노출력에 대한 것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악성중피종 진단서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질병까지 구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석면노출력이라든가 좀 추가적인 어떤 인정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다만 기존에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과관계 입증 수준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좀 완화되어서 우리가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박사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아무리 적어도 의료비, 요양비용, 장의비 정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죠?

○진술인 박종원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술인 박종원 재원조성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해서 제가 내용에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강성천 위원 재원확보방안에 관련해서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석면광산이나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오염원인자를 밝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술인 박종원 예.

○강성천 위원 따라서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오염원인자인 석면광산, 공장 등 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박종원 정부 역할이 아주 클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제가 원인자책임원칙을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원인자책임원칙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그 한계 때문에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제정안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담을 때는 가능한 한 그래도 이 원인자책임원칙의 그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어떤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석면피해보상금을 설치하는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박종원 예,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석면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은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2032년에 중피종이 피크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 30년 후에 오히려 이 석면 관련 질병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맞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서 세워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우면 2032년 이후에도 계속 이 석면 관련 질병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예.

○김재윤 위원 그리고 김현욱 교수님도 2035년이 되면 석면질병이 피크에 이를 거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술인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2, 30년 후면 석면 질병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욱 예, 동의합니다.

○김재윤 위원 왜 2, 30년 후에 석면질병이 더 심각, 지금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2, 30년 후에 더 이 질병이 심각해지는 것입니까?

○진술인 김현욱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잠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석면사용이 피크가 이른 시점에서 한 30년, 40년 레그타임을 가지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피크가 92년, 95년 그 사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한 40년을 거기다 더해서 2035년, 32년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2, 30년 후에 우리 석면질환이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석면특별법은 정말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구제대상 그리고 대상질환 그리고 또 보상범위, 보상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으로 피해예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김현욱 교수님께서 앞으로 석면피해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현욱 첫째는 근원적인 대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법안이 나와 가지고 석면사용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했지만 아직 까지도 일부 품목에서는 예외를 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원제품의 수입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근원적으로 처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석면이 이미 폐광된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석면이 이미 사용된 곳에 대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체, 제거가 진행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들이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윤 위원 박종원 연구원님, 노출경로와 상관없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대상에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또 임상혁 소장님이나 김동일 교수님은 비직업적 노출 피해자와 직업적 노출 피해자 중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만 대상을 삼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선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종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법에다가 답을지 아니면 산재보험법에서 해결을 해야 할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출경로에 관계없이 공정한 구제가 이

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도 산재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구제의 정도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등한 수준으로 충실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것을 꼭 특별법,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에다 직업적 노출을 꼭 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진술인 박종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로는 일단 일본에서는 노재보험, 노동자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재보험 대상자는 아예 석면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이원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박윤원 변호사님, 대상질환을 정할 때 함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질병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박윤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변호사님께서 함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구제대상을 함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질병으로 좀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박윤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게 한 6개 질환인데요. 제 입장은 그 6개 질환이 모두 법률에 근거를 해서 예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윤 위원 더 폭넓게 해야 된다?

○진술인 박윤원 예.

○김재윤 위원 최예용 소장님께서도 추가 질환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하시면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진술인 최예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최예용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프랑스에서도 소송이 막 증가하고 있대요. 일본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암 2개만 보상을 하고 그것도 액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런 외국의 경험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랄지 베이비파우더랄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을 더 많이 사용했다기보다는 훨씬 더 느끼는 민감도가 강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 의한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서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특수성이 반영된다면 굳이 고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석면폐나 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저농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려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담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석면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그래도 우리 국가가 모두 고려해서 정말 괜찮은 그런 사회 안전장치를, 석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박종원 연구위원님, 대상 질환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법적으로 석면피해를 줄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질환을 정확히 하는 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합니까?

○**진술인 박종원** 저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없는데요.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후가 심각하고 특별히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과 같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우선 법에서 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컨대 제 생각에는 석면폐라든지 흉막질환 같은 경우에는 판정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구제법을 만들자는 것은 가능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를 해 줘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법에다 6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도출이 비교적 쉬운 부분의 질병이라도 일단 법에서 못을 박고 차차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판정위원회를 뒤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술인 박종원** 예, 따로 판정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겠지요.

○**김재윤 위원** 그리고 박종원 연구위원님, 최근 석면 베이비파우더와 같이 곳곳의 생활용품에서

도 석면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특별법에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진술인 박종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가가 석면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특별법에서 담은 내용들은 과거에 우리가 석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할 때 방치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관련법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면 예방하는 쪽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보상 범위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는 보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종원** 보상 내역을 보면 보통 실질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수당이나 장의비 아니면 사망했을 때 일시불 위로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과 별도로 살아생전에도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위로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급여나 이런 부분이 명목적인 수준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질환에 관해 규정한 진폐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명히 생전에 위로금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임상혁 소장님께서서는 프랑스 수준보다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진술인 임상혁** 기본적인 생활의 보상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박 변호사님은 말씀하신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아마 직장

을 잃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 그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회보험의 형평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김동일 교수님은 50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5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진술인 김동일** 기본적으로 석면피해 구제의 대상이 간접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한한다고 그러면 근로자보다는 보상이 적어도 적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통상 악성중피종은 사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총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1억 정도고 흉막의 질환은 살아가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한 10분의 1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윤 위원** 김현욱 교수님께서 농가 슬레이트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농어촌 어디에나 농가 슬레이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라든가 심각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왜 보상이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제거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현욱**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가 슬레이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한국산업위생학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농가 슬레이트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아 가지고 빗물 내에 석면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1ℓ당으로 따졌을 때 5만fiber라든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석면 슬레이트가 특히 노후화가 되었을 때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슬레이트가 70년대나 80년대에 설치가 되었다고 본다면 지금 대부분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주변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

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자체 자체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또는 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농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석면 슬레이트로 처음에 교체할 때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지붕 벗겨내고 안 하면 벌금 먹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도 교체를 하든지, 교체가 안 되면 현재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이나 이런 방법으로 표면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해 놓고 흘러나오지 않게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윤 위원**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쭙보면 앞으로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립석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국립석면센터의 필요성을 적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현욱**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면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곳도, 현재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한두 군데, 그것도 제대로 외국에서 말하는 정도관리를 받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석면에 관련된 것은 예방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예방에서도 질환자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센터도 없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립암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현재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한 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하나 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폐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공산품에 탈크 사용한, 석면 원료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 법에 반영할 방법이 있겠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2000년도에 제조물책임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손해가 야기되어야 되는 거지요.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만 부담을 덜어주는 민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예용 부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탈크가 사용된 화학약품을 여성이 특정 부위에 사용했을 때 난소암에 걸리더라 하는 외국의 연구가 있다는 것 하고, 아까 토론해 주신 임 소장님이신가요, 소화기나 이런 데에 흡수하는 정도는 지장이 없다는 논지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리콜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화장품이나 화학약품, 파우더 이런 것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리콜을 하려면 적어도 손해 발생이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더라도 의학적이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손해 발생이 뻔히 추정되다, 아주 위험하다라는 정도까지는 가야지만 우리도 판례법상 이 법을 원용해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증거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쏟아지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손해 발생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전 단계에서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서, 그렇다면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가들 입장에서 견해가 갈리거든요.

이런 석면폐나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질환인 것이고 호흡기 이외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때는 아직 그런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를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법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술인 임상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예용 선생님과 제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먹어서 생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먹어서 생기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체들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복막중피종암이 생기더라 이런 발표가 있고요. 또 동물실험을 한 경우에는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이런 데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험성이 있는지 논란 중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리스크,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보면 호흡기질환으로 들어오는 위해도보다는 상당히 먹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각에 경우에서 대책이, 정책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출되는 경우 또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일반국민이 노출되는 경우는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PL법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을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다면 제조물책임법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일상적인 노출에서 중요한 것은 수입이 금지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리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 정도라면,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득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임 소장님께 다시 한번, 아까 석면폐증의 경우는 폐나 이런 부위에서 석면에 대한 흔적 정도가 있으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진술인 임상혁** 석면폐증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석면폐증은 그냥 엑스레이 상에서, 물론 방사선과 전문의들, 영상의학 전문의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석면폐증이라는 확실한 진단기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폐증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무슨 폐암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석면 관련 질환이 생긴다면 이것은 당연히 석면에 의한 암, 석면에

의한 질환으로 인정이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원인 규명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임상혁**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인정 기준이고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노출력, 노출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데 보통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출력은 25fiber·year입니다. 그래서 1cc를 한 25년 정도 노출되면 우리가 이것은 석면에 의해서 노출된 것으로 인정, 석면에 의해서 노출된 것으로 생긴 병이라고 인정하자 그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것이 외국의 기준입니까?

○**진술인 임상혁** 그렇지요, 헬싱키 크라이터어리언(criterion)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진술인 김동일** 제가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그 정도는……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임 소장님께서 그 헬싱키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임상혁**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번역된 자료면 더 좋겠습니다.

○**진술인 임상혁** 예,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진술인 김동일** 헬싱키 기준이라는 25fiber에 1년 365일 동안 노출이 되면 석면에 의한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은 현대 도심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농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농도입니다. 사업장이 아니고서는 전혀, 그런 것을 만약에 이런 구제법에 기준으로 댄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 농도가 1000분의 1 내지 1만 분의 1f/cc인데 그것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장에서의 노출 아니고서는, 그것도 10년~20년 전의 사업장 노출 기준입니다. 이 구제법의 노출 기준을, 헬싱키 기준하고는 몇천 배의 차이가 납니다. 즉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안 좋은 환경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진술인 임상혁**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김동일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25fiber·year는 폐암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폐암에만. 그러니까 중피종암은 그냥 발견되면 석면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인정을 해 주고요. 석면폐증은 가슴

사진, 흉부 사진이 바로 석면에 노출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25fiber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폐암인 경우, 폐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업이나 환경에 노출됐는지 아니면 흡연에 노출됐는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노출했을 때 폐암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까 가슴 사진을 봤더니 석면폐가 있다든지 흉막에 그런 석면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출력들을 보는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고농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보통 폐암이나 석면폐의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많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예용 부소장님,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건축 사용을, 건축을 폭과하거나 멸실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존립기간이라고 할까요, 멸실연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콘크리트 건물이나니까?

○**진술인 최예용**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특히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 다른 주요 대도시, 세계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재개발 건수와 또 건축 멸실…… 뭐라고 할까요? 준공부터 멸실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로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배가 짧다든지 또는……

○**진술인 최예용**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인 임상혁** 제가 요새 연구를, 서울시의 건축물 석면조사라는 용역을 제가 하고 있어서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석면에, 우리나라의 건축물에는 1970년대 이전의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욕시에서 석면 조사를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건축물이 50년 이전의 건축물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년 서부터 이렇게 피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가 제일 많습시다. 이렇게 피크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멸실률이 아마한 2배 정도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秋美愛**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정말 진지하고도 많은 도움이 되는 진술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종원 부연구위원님께서서는 가정내 노출 등 석면 노출 경로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환경법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서는 악성중피종 외에도 석면 폐증, 폐암, 기능성 손실을 동반하는 흉막비후나 흉막반을 보상 질병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법안에는 보상 외의 예방적 측면도 포함시켜 종합적 대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최예용 부소장님께서서는 석면 노출자에 대한 등록제도, 오염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임상혁 소장님께서서는 석면폐, 폐암, 중피종 외에 흉막반, 후두암도 보상 질병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산재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추후 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원 내용으로는 최소한 요양급여와 생활급여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김동일 교수님께서서는 악성중피종 외에도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흉막질병을 보상 질병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석면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박윤원 변호사님께서서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로금의 포함이 필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공산품으로 인한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한 오늘의 공청회였습니다.

입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법안에 담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이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공청회에서 의학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논란이 다소 있기는 했습니다만 대상 질병 중에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과 더불어서 질환의 경증과 중증 정도에 차이가 있는 석면폐증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폐암에 대해서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노출자에 대한 등록제도와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국가뿐 아니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 잠복기로 인해서 향후 석면 피해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서 석면 피해 보상에 관한 입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 및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포함하여 이들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일부러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개의하는 시간은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계속)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강승규·강석호·권영진·권택기·나경원·신상진·안형환·안효대·원희룡·이달곤·임동규·조해진·한선교

- 의원 발의)(계속)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걸·정갑윤·의원 발의)(계속)
 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박종희·이계진·이명규·김태원·구본철·윤석용·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1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구본철·김태원·김효재·박준선·백성운·이달곤·이화수·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구본철·김태원·김효재·박준선·백성운·이달곤·이화수·허범도 의원 발의)(계속)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정해걸·박대해·진성호·김성태·강성천·정갑윤·안형환·홍장표·송훈석·김재윤·윤석용·박준선·조원진·원희목·김태원·이경재·조해진·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영진·이진삼·이범래·김태원·김동철·원희룡·구본

- 철·김소남·정병국·박종희·신상진·김희철·이달곤·정양석·김재윤·박상돈·이화수·김충조·강창일·신학용·조전혁·장광근·이성현·이윤성·조영택·윤상현·고승덕·강명순·최인기·강성천·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19.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김재균·강창일·김영진·강기정·양승조·김춘진·우윤근·주승용·전현희·이광재·백원우·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2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재균·김창수·박지원·송민순·안민석·양승조·원혜영·이광재·이미경·이용경·이용섭·조배숙·천정배·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2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유성엽·김재윤·강기갑·곽정숙·이정희·권영길·최문순·김성수·원혜영·송훈석 의원 발의)(계속)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대해·박은수·전현희·문학진·변재일·이석현·양승조·안민석·김영진·최영희·천정배·송영길·홍희덕·강기정·이용경·장세환·김재윤·안규백·이성남·이춘석·원혜영·이정희·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최구식·유재중·홍장표·안상수·강성천·손숙미·이달곤·홍희덕·박민식·서상기·황우여·김정훈·허태열·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5항까지 노동부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24건의 법률안은 지난번 281회 국회 제5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한 법률안

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유사 관련 법률안들을 묶어서 일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정부안 제30조에 고용기간이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

○강성천 위원 왜 대답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답변을 실무자한테 좀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입니다.

○강성천 위원 예.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고용장려금을 장애 정도나 고용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게 되면 전체 사업장에 지급되는 지급액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들까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그것을 그렇게 두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주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번 채용이 되면 계속해서 정년퇴임 때까지 장려금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엄지손가락 하나 다친 경우에, 그런 경우 계속 주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이 경과되면 근로능력이 충분히 일반인과 똑같이 되어 가지고 주지 않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장기가 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장려금이 줄어들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중증이라든가 여성의 경우는 더 우대를 할 생각입니다.

○강성천 위원 안 주면 줄어들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그런데 경증에게 주는 경우……

아주 경미한 장애……

○강성천 위원 아니, 경증인데 왜 안 줄어든다고 그러세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경미한 장애인한테 주었던 것은 줄이고 중증이라든가 여성에게는……

○강성천 위원 제 얘기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강성천 위원 설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중증이라든가 여성 쪽에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성천 위원 장애인고용기금을 왜 그쪽에다가 씁니까? 왜 여성 쪽에 쓰느냐 이거예요. 왜 여성 쪽에 씁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여성이라든가 중증의 경우는 고용 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니, 장애인에게 쓰는 것을 왜 여성에게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여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강성천 위원 여성 장애인……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여성 장애인 쪽에 준다 하는 얘기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직까지 장려금 의존성이 가장 높지요? 장려금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의무고용 때문에 채용되는 것이고 의무고용률보다 더 채용된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차등 지급이라는 지급 제한의 설정은 자칫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장애 근로자의 고

용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대답 안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우리 국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고용을 줄이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효과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장관님, 대답이 고용과장하고 장관님 얘기하는 것이 자꾸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개정안에서 좀 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현행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공공기관에도 의무고용률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까다로운 것 같고 20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에도 3%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에 할 것이면 그렇게 해야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 고용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힘드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타공공기관은 거의 민간 부분하고 같은 성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민간기업의 고용의무율, 지금 2%로 고시하고 있지요? 5%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것도 3% 이상으로 언제쯤 높일 것입니까? 이거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당장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3%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더 정착이 되고 여건이 성숙되어 가면 그렇게 좀 상향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기업에다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업 여건도 생각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민간 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가 지적한 기타 공공기관에는 좀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李和洙 委員** 안산 상록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28조의3항을 보면 말이지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썄요,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李和洙 委員** 이게 95년도에도 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장애인단체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단체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는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95년도에 반대했던 게 어떻게 동의를 한다고 쉽게 말씀을 하세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저희가 법 개정안을 할 때 입법예고도 했었습니다. 그때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상황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단체한테 잘 설득을 해서……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설득도 됐고,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고용이 별로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고용효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2배수 고용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률은 높이고 고용부담금은 덜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체로 봐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의무고용률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률을 조금 조정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2배수제도를 도입하면 0.28%p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을 더 고용하지 않더라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정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아집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의무고용률이 지금 몇 %예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지금 2%입니다.

○**李和洙 委員** 2%인데 의무고용률을 얼마만큼 조정할 겁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그것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영계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렇게 전체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마침 2009년도라서, 매 5년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마침 조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통과가 되면 경영계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조정이 안 되고 2% 의무고용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중증장애인, 원래 2%면 일반장애인 20명 할 것 중증장애인 하고서 한 10명만 해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 의무고용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국장님 말씀 갖고 답변이 안 되는데,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사실 고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경증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본다면 불리하다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선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점에 이번 법 개정에도 뜻이 있고,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지금 담당 국장은 고용률을 조정을 한단데 만약에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사용자단체에서 이제 그만하자, 2%가 적당하다고 했을 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해당 기업만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고, 어쨌든 만약에 그 기업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 종전에 경증장애인을 20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지금의 경우에 중증장애인 10명을 채용해도 같은 효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李和洙 委員**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할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두아 위원님!

○**이두아 위원** 이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있어서 예상 쟁점에 의무고용 강화조치가 경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의무고용률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5년마다 조정하고 올해 조정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시행령으로 의무고용률을 조정하면 의무고용률 시행령의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내년부터 됩니

다.

○이두아 위원 내년부터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언제부터 발효를 할 것 같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역시 내년부터입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령도 같이 조정이 되고 하니까 시행령을 같이 발효하면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무고용률 조정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조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두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을 2% 정도로 시킬 수만 있다면 아직도 의무고용률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고용을 이루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고용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 또는 경증장애인과 비교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이나 경증장애인 정도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근무환경 제고라든가 임금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노동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금이 정상인보다 못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중에서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받는 임금의 차이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89만 원 정도 되었습시다마

는 경증장애인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고용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일차적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아 위원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지금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말고도, 고용률 말고도 그런 근무여건이나 임금 확보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은 만일 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보조공학기 지원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두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공공 부문입니다.

○김재윤 위원 예,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직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윤 위원 공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기타 공공기관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그래서 공기업은 고용률이 2.2%,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2.48%, 그래서 이제 3%로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1.4%인데 기타 공공기관도 고용률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앞으로 그것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법적 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그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선 문제점은 많은 논란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 단체인 장애인단체 쪽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시행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이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과 중증장애인을 동일시하는 것보다 차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게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지요, 이 법에서 보면?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애인고용을 더 촉진해야 되는데 폐지하는 이유가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기능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활동을 해야 되는데 통합돼 버리면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 오셨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고용촉진공단 명칭 변경은 공단 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지금 이 법안 개정이 아주 시급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시급하다는 게 상대적으로……

○**김상희 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안이 8개가 올라온 것으로—제출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나머지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의를 해서 꼭 4월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이 관련되어 제출된 법안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그 의견을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의무고용률 조정을 금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상희 위원** 제 말씀은 6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내신 관련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고용률을 조정하려면 이미 지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데 의견을 좀 듣고, 또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듣는 절차가 필요해서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법이 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요.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에 보면 지금 지적했던 공공기관 부분에 확대하는 것, 또 범위에 대해서 다른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부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하여튼 법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쟁점이 전혀 없으면 간단한 대체토론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 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다른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장관님, 저희들이 법안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정부가 법안 집행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자꾸 쫓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정된 법안들은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애인 분들에 대한 해고사태가 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장관님, 의무고용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조차도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정부기관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기관의 불이행이 상당히 좀, 그 정도가 낮아서 어저께 국회와 우리 노동부가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박준선 위원** 어제 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어저께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부담금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벌칙을 주기보다는 지키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법에서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2배수 인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업은 부담만 늘었다고 투덜거릴 거란 말입니다. 돈으로 때운단 말이지요. 그것을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의무고용률보다 넘어서는 고용을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고용촉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재원의 문제인데 나라의 어떤 세금, 인센티브라면 세금을 면해 준다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세원 문제고 재원 문제인데 어쨌든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그 이상이 아니라 하여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어떠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전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나 하는데 사실은 비정규직도 그렇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선 제일 먼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데 고용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도 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눈치꾸러기가 돼 가는 실정인데 이럴 때 장애인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법의 시급성이라는 것은 일각이 여삼추라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관께서 즉답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법이다,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시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관님, 고용기간 등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 안을 보면 제30조 제3항 및 4항에 개정안은 “장려금을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인데 성별에 따른 차등지급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성별을 빼면 안 됩니까?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을 굳이 여가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대하기 위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순간에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우대가 아니라.

○**노동부장관 이영희** 현재도 조금 더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도 고용의 성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뜻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니요.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부담의 감면 혜택을 경증 중증을 차별해서 중증장애인 채용 시에 2배의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박준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서 본다면 고용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별표를 보니까 2000년부터 중·경증 구분하여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부문 의무고용인원 보니까 그나마 중증장애인이 민간 부문에 있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증 중증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경증이 59.1%, 중증이 40.9% 이렇게 우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려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인센티브 차등지급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가 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동안 볼 때 효과가 별로 크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차등을 좀더 크게 하자.

○**委員長 秋美愛** 그런데 부작용이 아까 지적사항처럼 경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중증장애인으로 대체 전환한다면 이게 장애인고용촉진정신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 우려는 또 있으니까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자의 경우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 때 경증장애인 두 사람 내보내고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을 일부러 채용한다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관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알겠습니다.

성별 고려는 법문안상 표시하지 않는 것이, 물론 우대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문안상에 표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것은 차별의 근거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박은수 의원님께서도 지금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개정안 내용에 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대해서 더 강조한 조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차라리 별도의 항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성별에 따른 차등 이런 표현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표현방식을 그런 취지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나중에 법안 축조심사 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영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이 법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우리 비정규직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관께서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해 놓으시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사회적 충격이나 파장이 커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올해 7월이면 100만 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고용연장이 안 되면 바로 해고될 것이라고 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급성을, 심각성을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장관께서 국회에서 이렇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어떤 통계나 자료와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좀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크게 만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실지로 그 계약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꼼꼼하게 근거를 가지고 통계에 근거해서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필요 이상으로 좀 불안이 가중되고 그런 문제, 국민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혼선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표현에서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그건 조금 제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기 어렵다,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 상상이라고 한 건 그건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동안 여러 군데의 조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그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기업의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 해당 비정규직의 10%나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10명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 이상 결국 한 8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 다소 조금 그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수가 추상컨대 100만이 된 건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 시점이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2년차가 넘은 사람이 100만 명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7월 달부터 계약 갱신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분들이 결국 정규직으로 안 되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그분들이 결국 해고당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저도 직접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서 장관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또 속기록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과장되게,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얘기해서만 잘못 이해되는 게 아니라 과장 자체도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 큰 장애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나 그런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을 하셨고 지금 또 말씀도 여기 자료를 보면 8월 말 조사로는 한시적 비정규직이 260만 명 정도인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 문제가 된 100만 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바로 해고될 것이다 해서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것 연장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고 해고되는 것으로 지금 단정을 하시고 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투의 단언을 하심으로써 노동부의 정책의지가 좁 어떤 비정규직의 현재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을 하시되 또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장관의 말씀을 통해서나 이번 예산을 통해서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부정 일변도로 과장되게 전달되는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당사자인 비정규직에게는, 2년이 이제 도래한 당사자인 비정규직에게는 계약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 오는 순간 정규직 아니면 해고당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좀 강조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노동부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 배경이 제가 그런 강조를 좀 한 것 입니다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2년이 넘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그 근로자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제3의 길이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원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관님의 답변을 제가 조금 정정을 해 드릴게요.

장관님, 현행의 비정규직보호법 부칙을 한번 봐주십시오. 부칙을 보시면 장관님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이 되면 한꺼번에 100만 명이 2년이 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칙에 의해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그 사이에 만약에 2년 기간이 도래를 했는데 다

시 회사와의 사이에 또 기간제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7월이 되더라도, 2년이 넘었더라도 그 사이에 한번 계약을 갱신했으면 또 자기의 계약기간이 2년 되도록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이 순차적으로 100만이라는 숫자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관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은 빠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도래되는 숫자를 다 합치더라도 아마 60~70만 될 겁니다. 그건 금년 7월부터 앞으로 상당한 기간, 1년 사이에 그렇게 되는 순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하지 말아라라고 기업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면 지금까지 한 13~14%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것마저도 스톱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자꾸 한꺼번에 100만이 됐다고 한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전문 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 얘기하실 때는 비전문가들은 장관님 말씀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또 260만이라고 지금 방금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거나 하면 무엇을 가지고 정부 정책의 기준을 삼는 것인지 아주 답답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연장하려고 하는 뜻을 표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한 것은 이미 일반 사업장에서는 지금 가령 4월 달, 5월 달에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라도 지금 계약갱신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3년차 들어가더라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그러한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7월로 돼서 넘어가서 2년이 넘어가버리면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는 생각 하에서 고용연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 현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고용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했다는 점을 또 한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향후 1년 사이에 얼마나 그 2년차가 해당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숫자는 사실 아주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260만 명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 법이 그냥 바뀌어

지지 않고 가는 한은 향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비정규직으로 동일하게는 있을 수 없고 결국 한 바퀴 돌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 다 해고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나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변화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비정규보호법 부칙 2조인가요, 4조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 이전까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연장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100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은 이 법에 의해서 차단되도록 되어 있던 말씀이죠.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를 한번 장관님께 보여드리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이 환노위에서도 제가 7월부터 한꺼번에 100만 명이 해고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 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원혜영 위원님이 100만 실업 대란설에 대해서 또는 260만이라 하시고 해서 그 말씀 자체의 모순과 서로 상치함과 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 또 방금도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객관적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00만 명이 도래된 이분들은 해고가 되는 건 틀림없는데 시기가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하는 건 나눠져서 그 계약갱신 시점에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미 그건 드린 겁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오는 문제를 한꺼번에 고용시장에 쏟아져서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분들마저도 사실은 장관님이 가만 계시면 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희망의 싹마저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님이 불안을 조장하시니까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으시다면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대책도 세워가면서 천천히 올

일이다라는 말이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건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시행한 지가 2년이 되었고 사실 초창기에는……

○**박준선 위원** 장관님, 답변 그만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아니, 답변 다 하십시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비정규직법 시행 초기에는 정규직 전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보고 물어보셨습시다만 비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됐느냐 할 때 우리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공공부문, 공무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약 8만 명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간부문에서 대체로 지금 대부분의 비정규직 기간제가 중소기업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규직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법이 연장될 테니까 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그건 하나의 그분들의 구실이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걱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이 좀더 유지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비정규직 상태를 고착화시킨다든가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委員長 秋美愛** 알았습니다.

장관님의 인식과 사실은 노동계나 또는 고용시장의 실제 근로자들의 불안과 인식의 원인은 상당히 다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2년마다 바뀌는 자리입니다. 2007년 2년 전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정치권과 노동계 합의로, 사회적 합의로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환노위가 지금 일도 안 한다고 맹비난을 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말 뒤집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사회적 논의 없이 장관님의 그릇된 인식 아래에서 엉터리 통계 가지고 여당 일방으로 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데 그런 거수기 노릇은 할 수 없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사회적 여론을 더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통계 더 많이 자료 확보해서, 통계청 통계하고도 다르고 노동연구원의 입장하고도 다르고 또 장관님의 시시각각의 발언하고도 많이, 숫자마저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지고는 우선 정부안이 너무 서둘렀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정규직법안 그 자체를 안 고쳐서 고용위기가 온 것처럼 정작 하실 일은 하지 않고 법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박준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준선 위원** 오랜만에 원혜영 대표님 오셔서 노동부장관 상대로 하실 말씀 있는 것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정규직보호법에 관련된 대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상정되어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그런데 사실 이 비정규직보호법만큼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노동부장관, 저, 원혜영 대표님, 추미애 위원장님, 오로지 관심사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빨리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격론을 벌이고, 비정규직 당사자도 부르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부르고, 한국노총도 부르고, 이 상임위에서 한번 격론을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리고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과연 장관이 기업들에게 시그널을 줬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는지를 여기서 한번 난상토론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정된 법들을 토론하고, 위원장님께 저도 지금 말 나온 김에 장관이나 담당 실무국장들한테 도대체 통계를 뭘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한번 물

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김상희 위원님이나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걱정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연 이 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장외에서 하지 말고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의 주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상정하고 논의를 하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오늘 법안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금 예결위에서도 최대의 현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 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여야 예결위 간사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예산의 문제 때문에 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혼선이 있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과연 현행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가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안 대체토론이 끝난 이후에라도 이것은 쫓아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입장,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도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입장, 자유선진당의 입장 다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과연 어떤 안이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진정 노동계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선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 사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각 언론의 사실부터, 방송부터 관심이 많고 TV토론까지 하는 마당인데 정작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말 나올 때만 하는데 법안을 상정을 하고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상정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특별한 날을 잡아

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관련자들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우리가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들이 협의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환노위가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장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정작 환노위에서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 한다, 그 이유는 법안이 상정이 되면 아마도 흘러가서 다수결로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수결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게 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정을 하고 하건, 안 하건 어쨌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도 그렇고 실무국장도 그렇고 간간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본인이 시간 제한해서 얘기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내놓고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가 자료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그리고 민노총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국노총에서 뭐를 반대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지, 지금 사실은 하나의 도그마처럼 비정규직보호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또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민노총과 한국노총,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고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아니더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헛갈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되짚어보고 하루종일,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적절성은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지금 벌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법안이 올라와서 국회의 절차를 밟고 나면 상정을 하겠다, 상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간사들이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날 정부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여야 합의하에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여당이 밀어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가 분명히 발표해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데이터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실업자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발생하느냐? 우리 고용보험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DB를 조사를 해서 보면 2008년도에 평균이 60 대 40입니다. 뭐가 60 대 40이나 하면 자발적 보험상실자가 2008년 평균은 60이고 비자발적 상실자가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월달 평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5 대 55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비자발적 상실자는 해직자입니다. 해직당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비자발적 상실자가 전체 고용보험 프론테지로 따져서 몇%가 늘었습니까? 15%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그전에 IMF 때는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실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많이 따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보험에 비자발적 보험상실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해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가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법을 상정해서 법을 다뤄야 됩니다. 법을 다루고 아까 박준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을 다루는 데 좀더 노동계나 정부나 여러 의견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해야지요.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게 진짜로,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다 내놓고 노동계도 한번 가져와 봐라, 야당도 가져와 봐라 이래서 다뤄야지요.

법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시한적인 법 아닙니까? 법 상정 안 하면 언제 법을 다릅니까,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법을 만들었던 때하고 다릅니다. 법 상정의 문제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법 상정은 국회에 법을 상정하

면……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위원장의 권한 운운하시면 제가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188개의 법안 중에서…

○**委員長 秋美愛** 마이크 꺼주세요.

○**조원진 위원** 188개의 법안 중에서 144개의 법안을 아직 상정조차 안 했다는 거지요.

○**委員長 秋美愛** 정치발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정치발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委員長 秋美愛** 우리 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한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어요. 정치발언 하지 마세요. 번번이 한나라당 내에서 장외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내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자, 정치발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 차원에서의 주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정당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8개 법안을 올렸는데……

○**委員長 秋美愛**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의사일정 다 정해 왔습니다.

○**조원진 위원**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법안을 상정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위원장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소위 구성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열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열 다섯 번.

아니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자,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내 얘기 털 끝났다니깐요.

○**김재윤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조원진 위원** 지금 말을 막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다른 커다란 상임위원회, 위원회 구성 숫자가 많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는 위원님들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규모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소위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마 상시적으로 일곱 내지 여덟 분 정도가 꾸준히 출석해서 발언하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소위가 없어서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지 못한 분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발언 중에 '위원장이 법안 상정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바로 그 발언하신 위원님이나 또 야당 측 간사님이나 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아래, 수시로 접촉 아래에 법안을 상정해 왔고 또 제가 그것을 한 번도 상정하지 말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정을 원하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 상정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아래, 또 저도 법안 하나하나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 아래 우리가 법안을 꾸준히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위원회가, 밖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불량 상임위원회다라는 막말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따로 오전 10시에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 또한 그런 게으른 정신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내일 10시에 따로 비정규직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지어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먼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비정규직법은 홍준표 대표님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계실 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함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지금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노동부는 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됨으로써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을 막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뒷받침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계속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입법해서 국회로 넘어온 것은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아서 못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위원님들조차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 의해서 또다시 피해를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고 무엇이 가장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생략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일하지 않는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지금 여야를 떠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방 해직에 의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법안소위 구성을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서 법안소위 구성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상임위 전체에 그러면 법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게 어떡냐, 제가 찬성은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 찬성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제가 찬성했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뒤집었습니다, 못 한다고.

지금 간사님 말씀이 다르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숫자가 적어 가지고 법안소위 할 필요 없이 위원장님 뜻대로 그러면 모든 미상정법안을 상정을 하자고요. 여기에서 상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 안에서 한번 다루어 보자는 애기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이에요. 토론해서 노동계도 부르고 정부 측에서도 좀더 데이터를 준비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지를 해서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혜영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야 대표 간에 환노위 부분은, 아까 박준선 위원님 말씀인데, 환노위 부분은 법안소위가 동수로 하지 않는다고 빠져 있던 말이지요. 그 부분도 원내대표단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상황이니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바꾸자든지…… 이게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는 게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어 주든지 그렇

지 않으면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된 법안소위 구성에 맞춰서 법안소위를 해서 빨리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2년 전에 여기에서 합의로 된 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왜 손을 보자고 하느냐 하는 말씀도 한편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이게 통과될 당시에 여당, 야당, 정부, 또 노동계가 이게 아주 잘된 법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만 가면 문제없이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되지는 않았고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법 그대로 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라고 그때도 문제 지적을 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나 또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7월 이후부터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다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가령 이 법을 그대로 두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면 야당이나 노동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렇게 막고 있었다가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책임을 저 줄 수 있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봐, 당신들이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나 여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완책을 마련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간사 간의 협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박준선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상정해서 본격 토론하자고 제의한 것은 아마, 간사님 간에는 다 그전에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개별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존중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토의해 가지고 상정하자, 말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됩니다. 간사 간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일임해 가지고 거기에서 딱 그냥 병목이 걸리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의 운영상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안소위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 수 전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더 숫자 줄여 봐야,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하면서 하는 것은 결론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서로 의견을 좁히고 좁혀 가지고 결론까지 내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대체토론 하지만 결국 조정하고 하는 것은 소위에 가 가지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법안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숫자가 타 큰 위원회에 비해서 적다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세부적 논의를 하는 것이 빨리 법안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준선 위원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약간 기형적인 것은 정식 정부법안은 4월 1일 날 제출되었고 이제 스무 날 조금 지났는데 작년 말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도 아주 기회만, 틈만 있으면 비정규직법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정식의제는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계속 나왔어요. 예산과 관련해서든 정책과 관련해서든 법안과 관련해서든 틈만 나면 제일 많이 논의된 게 이 그것인데 저도 제 입장이 있지만 이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찬성이나, 반대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나 전망이나 여론이나 또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런 실사구시적인 것을 놓고는 서로 인식이 좁혀지거나 의견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찬성이다, 반대다, 논의하자, 말자 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데 정작 법이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법이 제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 할 수 있지만 법이 이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 상정 안 해 놓고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는 일은 여기에서 이제 중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을 상정해 놓고 과연 누구 전망이 옳은

가, 크게 우려할 만한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더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더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와 아주 미시적인 정책 하나 하나를 놓고서 관계전문가들 모셔 놓고, 공청회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게 폭넓게 이제는 의견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법은 따로 놓고서, 우리끼리 공방 벌이는 것보다 법을 올려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논의절차를 본격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저는 하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원혜영 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용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께서 근거에 없는,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을 계속 언론에다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예결위에서까지도 아주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노동부장관께서 지금 해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노동부장관께 여러 번 해명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듣고 회의석상에서도 들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해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100만 명이 7월이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바로 해고될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부적절하고.

어제 미네르바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미네르바가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인터넷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 유포이고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 가지고 한 일개 국민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100만이 해고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법 부칙에 의하

면 2007년 7월 법 개정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기간제 수가 한 5만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 7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5인 미만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5세 이상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만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치면 20만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무슨 근거로 자꾸 100만이 다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적절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급기야는 20일 날 국회 예결특위에서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법을 환노위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노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법안심사소위가 없어서 상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올렸고 우리가 많은 법을 그래도 통과시켰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법률안을 11월 달에 6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여당 간사가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된 것을, 그래서 144개 법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11월 달에 낸 법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여당 간사가 누가 합의를 안 해 줬습니까?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조원진 위원 아니,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김상희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조원진 위원 옆에 있는 김재윤 간사한테 물어 보세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조원진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합의를 누가 안 해 줬어요?

○김상희 위원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말씀 중에 하지 맙시다.

○김상희 위원 여야 간사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상정하자고 간사들이 합의를 했고 그리고 세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낸 법안들이 이것은 합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미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한 법안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정규직법 정부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이제서 정부 법안이 4월 1일 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여야 간사 간에 협의조차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환노위에서 지금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야당이 이 부분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제시간에 처리되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노위를 불량 상임위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금 여당 간사가 김상희 위원님 올린 비정규직 법안을 합의를 안 해 줘서 못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 없고요. 그것은 김재윤 간사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알 것이고, “비정규직법안은 정부 법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의를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아예 비정규직법안을 다루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민주당에서.

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께서 “그러면 숫자가 적으니까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다 올리자.”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때 김재윤 간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루만에 김재윤 간사가 와서 틀렸어요, 안 된다고.

아니,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앉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상정되어 있는 모든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체토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안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 상임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법안소위가 구

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우선 절차상으로 법안소위 구성을 하자……

그다음에 오늘 원혜영 대표보고 말씀드린 게, 환노위 법안소위가 동수로 하도록 안 되어 있으니까 대표 간에 동수로 하든 어떤 결정을 좀 해 달라…… 원내대표 간의 결정은 4 대 2 대 1로 결정을 했는데 상임위원장께서 “그것은 못 받아들일 것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좋다. 그러면 대표께서 한나라당 대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올렸든 정부가 올렸든 법안은 다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상임위에서 모든 문제를 한번 다뤄 보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김상희 위원님!

○**李和洙 委員** 계속 논란만 하면 뭐해요?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게 낫지.

○**김상희** 위원 지금 조원진 위원님께서 제가 낸 비정규직법안, 11월에 낸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 법안이 오면 상정하자라고 여당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조원진** 위원 야당 간사가……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조원진** 위원 물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야당 간사가 “비정규직법안은 지금 다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정규직법안이 정부 법안은 오지도 않고 여당 의원이 내지도 않았는데…… 11월 달에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정부 법안 오면 같이 상정하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원진** 위원 그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김재윤 간사가 “비정규직법안은 나중에 다룹시다.”, 비쟁점 법안부터 다루자고 나온 거예요.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다 논의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미상정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 둘 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통령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다 청와대와, 하나하나 상의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다 이해가 되고……

○**김재윤** 위원 그런데 2007년도 12월 대통령님께서 한국노총하고 정책연대를 하시면서 “비정규직법은 잘 지키고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이 법을 강화하고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한국노총하고 정책연대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공약을 바꾸는 입장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꾸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모든 정치적 과정이 선거에서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합니다만 정권을 맡게 되면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등등에서 다시 정책을 재점검하고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이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을 악화시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법이 본래의 이상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로자

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이 나와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진작부터 했는데요.

홍희덕입니다.

저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상정이 되지 않은 만큼…… 또 저는 민주노동당의 5명 의원 중에 혼자 와서 어떻게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상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에 오기 전인 2006년도에 바로 여기겠지요, 홍준표 지금 대표께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계실 때 법안이 통과하는 그날 밤늦게까지 국회 앞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여러 조합원들하고 이것은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다소만 보호하지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대했던 법안이 지금의 법안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법안이라고 봤을 때 올 7월이 가면 이제 그 시점이, 우리 장관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우선 비정규직의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정부가 내놓는 비정규직의 규모, 다릅니다. 또 우리 양대 노총, 노동계가 내놓는 비정규직의 규모, 직종 이것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이것 진단부터 잘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추산해 봤을 때 비정규직의 범위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다는 데는 아마 어느 위원님들도 문제를 달지 않을 것이 다…… 가장 많습니다, 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느냐 하면 비정규직을, 그 많은 비정규직을,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2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면 그게 없애는 거냐, 고통을 덜어주는 거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항간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법안의 2년간을 4년으로 유예한다 그러면 6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로만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고통을 더

안겨 주는 법안이다……

이런 방향의 문제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에게, 또 그런 사용자에게 국가가 많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통 크게 해서 줄여 나가는 데 주안점을 뒤야 되고, 법안도 비정규직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위원장님, 다만 정정을 하나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노위에서 통과되실 때 위원장님은 홍준표 의원님이 아니라 이경재 의원님이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 그랬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

○**委員長 秋美愛** 통과될 시점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논의를 모아 갔던 분은 또 홍준표 의원이시고요.

오늘 이 상임위원장을 거쳐 가신 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칼을 겨누면서 불량 상임위원회다라고 모욕을 가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자세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법은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님도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전의 전임 노동부장관님도 그러한 취지로 이 위원회를 거쳐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하기 전에 그 신뢰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법은 왜 만드는 겁니까? 상정만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조2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현재 사회적기업 218개의 인증 현황을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북이나 충북에는 14개인 반면에 대구·경북·경남 같은 경우는 6개이고 충남은 4개에 불과합니다. 지역편중이 심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적극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지역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가 먼저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책무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낙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다 더 해야 할 방법은 지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지요. 지역편중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지자체 간 지원 인센티브상의 불균형,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양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방에서도 예를 든다면 전주시, 경기도 또는 청주시, 강원도, 전라남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이법이 단순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더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1000개의 사회적기업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숫자 채우기 경쟁은 자생력을 잃고 정부예산만을 받아먹고 자라

는 골칫덩어리를 만들어낼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요건이나 그걸 충족했는지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적기업원의 설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 개정안 10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80억과 인력 96명을 총원하는 노동부 산하의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좀더 책임을 갖고 관리하는, 통괄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반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설사 사회적기업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관리의 노하우가 많은 부처가 그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랄까 인식이 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기업과 다른 측면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와 보다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또 다른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지금 정부 법안으로 사회적기업법 보면 고용정책심의회가 지금 통합이 되지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하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통합해서 고용정책심의회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거기서 하든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회……

○**김상희 위원**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든 어쨌든지 간에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고용정책심의회입니다.

○**김상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기구가 직접……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구상으로 본다면 산하 전문위원회이니까, 그러나 고용정책심의회가 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부분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하고는 좀 역할과 업무 내용들,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 효율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까지도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이렇게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것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기업을 육성하고 인증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 만들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다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든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의견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께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은 직접 정책을 담

당하는 고용정책관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위원회 정비는 정부 전체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문 체계상으로는 마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향후 시행령에서 육성위원회로 전부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고용정책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가 있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항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서만 끝납니다. 그리고 고용정책심의회는 그냥 결과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아닌가요? 위상이 시행령에서 전문위원회가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육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기능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지금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의 국장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구성체제로 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위원회 조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사실은 더 격이 높은 데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회의체가 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장관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지금 진영 의원님은 오히려 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을 좀 높여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부입법은 보면 오히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폐지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다면……

○**김재윤 위원** 고용정책심의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를 대신하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전문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김재윤 위원** 진영 의원님 안은 강화하는 안을 내서 혹시 폐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총리실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총리실의 위원이 장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타 부처 장관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총리실로 바꾸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김재윤 위원** 총리실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유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로서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결코 약화시킬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진영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설치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하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기금 설치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부가 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이 거기다가 돈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행정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련 부처와 좀 협의를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협의는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 중요한 조항인데 이 부분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데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동일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입장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의원께서는 기재위원회 쪽에다가 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이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진영 의원님이 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동의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승규 의원님께서, 한국사회적기업원 예산이 향후 425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원의 설립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저희 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노동부가 설립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법안에 담으려면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부처 간에 협의도 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공공기관선진화 방향하고 상치되게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에 비추어 봐서 이런 사회적기업육성원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수 위원님!

○**李和洙 委員** 이화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재 임금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면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보험금을 수급할 때 이때 액수가 감소하는 상황

이 발생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부담이 준다는 측면보다도 종래에 이것이 4대 보험으로 징수 통합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 우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임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주 원천이 임금 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대체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담당 국장이 제대로 한번 답변보세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어서 보험료를 걷게 되면 중소기업은 혹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나중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때도 그에 연동해서 적게 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예.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낼 때의 산정 기준하고 나중에 보상을 할 때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이 두 체계를 맞추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설사 지금 개정된 대로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겠지만 보상 기준은 여전히 평균임금으로 계속 되어 있을 것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자하고 사업주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인하해 주지는 않고 징수를 더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도 저희 추계상으로는 총체적으로 약 1% 내외 정도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내느냐에 대

해서는 성과급이 소득세 산정기준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기업이 좀 더 부담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식대나 초과수당이 소득세 산정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면 성과급이나 그제 임금에 포함이 되면 근로자도 더 내야 되는 그런……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데 소득 규모에 따라서 극히 적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율이 금년도에 약 1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대기업조차도 그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산정기준은 임금이잖아요, 받는 임금?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和洙 委員** 그렇죠.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보상받을 때는 지금도 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냥 합니까, 이 제도로 바뀌어도.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임금……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바뀌는 것은 저희가 돈을 거둘 때 무엇을 기준으로 걷느냐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급여를 지급할 때는 평균임금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요.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평균임금이든 간에 그 임금에 의해서 보험금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할 것 아닙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거둘 때는 부과기준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바꾸고요 어떤 형태든 돈을 드릴 때는, 산재보상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드릴 때는 지금처럼 평균임금 개념으로 그냥 쓴다는 말씀입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징수하고 많이 주겠다는 그런 법으로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취지가?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자가 적게 내고 보상은 종전하고 똑

같이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대기업은 거꾸로 종전보다 조금 더 많이 걷고 결과적으로 예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상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4대 보험 다 제멋대로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여기에 납부할 때는 성과급 빼고 계산을 해야 되고 저기에 납부할 때는 성과급을 넣고 계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줄곧 호소해 왔기 때문에 2005년부터 계속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은 뭔가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부 내에서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조금 늘 수 있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도 또 추계에 불과합니다.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고요.

○**李和洙 委員** 그 추계를 지금 담당국장은 대기업만 조금 더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아닐 것 같고, 그건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안 개정안 제2조제3항은 수급액 산정기준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개정안이 마련된 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항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희덕 위원** 홍희덕 위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6항에 보니까 고용보험의 임의가입과 해지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할 때 과반수 동의, 해지 시에는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해지 시에도 과반수로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은 아주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종전과 같이 해지 시에도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엄격한 요건을 좀 유지해야 되지 과반수 해 갖고 그냥 이렇게 해지하고 이러면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3분의 2나 과반수나.

왜냐하면 저희가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해지신청 요건을 논의하는 이 조항은 뭐와 관련이 되느냐 하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4인 이하?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러니까 4인 이하의 사업장이면 맥시멈 4명이라는 얘기인데 4명인 경우 3분의 2를 해도 역시 3명이고 과반수를 해도 역시 3명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맞춰 봐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 이 5조6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말씀 다 하셨습니까?

○**홍희덕 위원** 예.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김재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지역별 기준보수 도입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적…… 우리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기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6개 광역시·도별로 11개 업종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준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김재윤 위원** 지역별 기준임금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김재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그래서 저희

가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김재윤 위원** 이번에?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번 개정안에도 그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개정안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김재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

○**김재윤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님!

○**강성천 위원**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제13조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서 고용정책 관련 정책에 관한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고용영향평가 도입 자체는 노동부가 아주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정책평가가 사후평가에 그치거나 피드백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결과 통보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물론 고용영향평가는 사전적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떤 고용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좀 살피고 그런 개선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드백적 기능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최근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고용지원센터의 수나 인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이번 정부 개정안 12조에서는 고용서비스산업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민간기관 인증 등에 대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 내용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고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오해를 생기기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점은 저희 고용정책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고용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확충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또 민간이 같이 받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구요.

민간의 고용서비스시장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중의 일부를 민간에다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다 이렇게 저희가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담는 정도의 선에서 본 법률을 개정하되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한 계획을 노동부에서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노동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희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국회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지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또 이 법과 연계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항에 나오는데 고용정책기본법은 전부개정하는 법이고 또 10항의 직업안정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이지만 여기에 종속되는 법안이라고 판단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고용정책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함에 있음은 당연한 목표이고 특히 현재 국민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로서 조문에 명시돼야 한다,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할 의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 공공 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을 연결한다는 것은 개인의 고용 정보를 민간 직업알선 기관에 넘겨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위탁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공공 고용망을 확대해야 된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고용서비스 전문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양성

되어야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놓으면 정부 정책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것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이 법을 제정할 당시가 93년입니다만 당시와 지금은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게 크게 변하고, 말하자면 지금은 실업이라든가 고용을 보다 촉진해야 할 이런 기능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걸맞게 하나의 노동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위상에 맞는 법체계를 갖추고 미래의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다 더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흥 위원님의 견해는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법을 만들 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서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드릴 내용을 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 직업안전 기관과 민간 분야는 협력관계 속에서 발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경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반드시 공공 고용서비스 분야가 확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나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 공공서비스를 일정부분 하는, 아주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적절히 설계하면서 민간에다가 위탁하면서 민간을 공공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또 공공 분야의 역량을 확충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

외국 사례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 제12조에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의 민간위탁 확대 부분은 아까 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도 일정부분은 민간이 시장 속에서 담당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다 공공이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혼자 힘으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공공 부분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저희 역량에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간 부분이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 민간 부분이 담당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민간 부분에서 이런 고용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민간이 고용서비스를 활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만 날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면 바로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용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 부분과 민간의 고용 정보망의 연계 부분은 사실 과거부터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수집한 정보든 또는 민간 부분에서 수집한 정보든 간에 그런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거부터 해 오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홍희덕 위원** 지금 설명을 주 하셨는데 그렇게 직업알선 기관과 서로 연계를 주 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인 신청이나, 특히 구인 신청한 기업들인데요. 구인 신청한 기업에서 이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

한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고용정책관계서도 전반적으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걸 하셨다 그러는데 공청회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으니까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답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죠?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의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개인에게 1대1로, 물론 상담도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된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합된 모든 지원 서비스를 우리 고용지원센터가 다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설사 일부분을 민간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정말로 공인된 우수한 기관이 해야 되지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려고요.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정된 일자리, 노동부에 공무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앞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기준임금을 달리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 지적은 그 부

분이었는데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시 바로 잡겠고요.

그다음에 장관님보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가 전국에 82개소, 직원 1인당 담당인원이 8300명에 이르더라고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김재윤 위원** 독일의 851개소 담당인원 447명, 영국의 1144개소 담당인원 329명, 이웃 일본도 639개소에 담당인원이 3703명으로, 지금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 대안을 좀 답을 수는 없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은 장관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 부분, 정부가 특히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날 국민을 가장 섬기고 봉사해야 될 부분이 고용서비스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의 정책이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업 알선을 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확장되고 인력도 크게 보강되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그래도 정부 전체에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장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용지원센터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직업 소개나 취업 알선을 보면 NGO에서 하는 무료 취업알선센터가 있고 또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는데요, 보니까 무료 취업알선센터는 전국에 37개에 불과하고 주로 유료 직업소개소더라고요, 6100여 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 평균 종사자 수가 2005

년도 기준으로 2.4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임시·일용직 알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이런데다가 소개료도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서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한 고질적인 중간착취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민간 고용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선과 산업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서비스기획관이 답변……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유료 직업소개소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하였고요, 무료가 지금 500여 개가 되는데 너무나 적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전달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관련해서 착취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전체 자치단체에 보내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양질의 업체를 육성하려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면 영세업체가 난립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직업소개 사업을 보면 사람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조금 안 좋았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 HR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분야라서 이 부분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의미가 있어서 구직자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그리고 구인자 부분에서는 그 규제를 대폭 풀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는 걱정이 적어도 고용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용정책관계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공 부문이 강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유럽 국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영미 그룹은 그보다 조금 반대 양상을 보여 주고 있고요, 심한 경우 호주 같은 데는 그보다 더 민간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컨대 큰 기업들이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하고 큰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회에서 서비스를 살 수 없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공으로 끌어들이어서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번에 법 개정하면 오히려 직업소개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아마 구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현재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직자 부분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인자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인자 부분은 큰 기업들이 쓸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거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 반대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하여튼 이 두 법은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회에서도 충

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님, ‘이 두 법’이라고 하면……

○**김재운 위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7항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화수 의원과 이윤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또한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질의 중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또……

○**홍희덕 위원** 잠깐만……

○**委員長 秋美愛** 홍희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10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8·9항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7항과 10항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게 일부 개정이라고 하지만 같이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2조에서 취업에 따른 소개료와 별도로 응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취업 과정에서 근로자는 이중으로 소개료를 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노동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중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민간 업체의 이익만 반영한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 정의 부분에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의 범위를 개념을 확장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모집·탐색을 거쳐서 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소

개 개념을 넓혀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모집입니다. 그래서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기본 전제를 법문에 깔아 놓았고요.

단서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헤드헌팅 같은 게 더 들어갑니다. 헤드헌팅 같은 게 들어가는데, 모집 플러스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근로자들한테 직업소개가 이루어진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장상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문장을 일부 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조3항에서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료에 대한 규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홍희덕 위원** 그래서 소개료가 조금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구직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지금 세계적으로 구인자한테 직업소개료를 제한하는 그런 나라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만 존재해서 구인자 부분은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 구직자 부분은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홍보 쪽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상담원 고용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것을 좀 완화하고 요금 상한을 폐지, 양벌규정 완화를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유료 직업소개소 알선은 95% 이상이,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 90%라고 그러셨는데, 임시·일용 알선에 편중되어 있고 종사자도 평균 2.4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영세하고, 또 7000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결국 이 업체들이 더 난립하고 그 부담이 오히려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가 되고, 개정안을 내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직업상담원 규정을 문구 그대로 보면 ‘1인 이상의 직업상담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실태를 보면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1명 이상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대부분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인이랄지 아니면 남편이랄지 아니면 자녀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급 가족종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라고 바꿔 냈고요, 단서를 지금 달아 놔는데 실제로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소개사업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소개사업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직업상담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그 부분까지도 1명을 더 채용해라 그렇게 옳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이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옳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풀어 봐도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윤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안을 내셨는데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현재는 근로자 공급 사업의 주체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노동조합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부안에서도 법안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윤성 의원님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윤성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 중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입법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렇게 하면 소개소 또는 공급자 측의 부당 착취나 이런 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근절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님!

○**강성천 위원** 장관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파견법 44조·46조, 44조는 벌칙조항이고 46조는 과태료조항인데 여기 양벌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이번 파견법 개정안의 과태료 전환 조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이 서면고지 의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에 부과하던 징역,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맞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 근로조건 명시 의무규정이 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을 부과하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고지 의무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 아닙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더구나 근로기준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과태료로 완화했을 때 과연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44조에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쟁의 행위에 대체파견 금지나 경영상 해고의 일정기간 파견 금지 같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절차적 부분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항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직접적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형벌규정을 그대로 두고 서면고지를 하지 않는 이런 절차적 부분은 행정벌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입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에서도 서면고지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 조항으로 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완화는 해 주지만 파견근로자가 그렇지 않아도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강성천 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고지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최소한 근로기준법 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서면고지 위반이랄지 같은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26조4항에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의 구체적인 내역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했을 때는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과태료로 전환하겠고요.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할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천 위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특별히 노동부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파견법에 대한 과태료 전환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벌금형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의결 시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방금 지적해 주신 강성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축조심의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정부에서 벌금형을 과태료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런 걸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문제는 벌금형은 한다 과태료로 한다 이 차원보다는 좀더 선계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위반이 됐을 때 주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검찰에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로 해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근로기준국장님,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하는 사업주 이렇게 하는 부분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예.

○**홍희덕 위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가서 ‘협의 없음’ ‘기소 유예’ 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주로 절차적 부분들,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들 개인의 근로조건을 직접 위반하거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같으면 기소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고지할 의무를 안 했다랄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할 때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주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기소 유예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유형의, 26조3항에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가를 구체적으로 내역 제시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거기에 거부하면 역시 과태료로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잠깐 지적하고자 하면 비정규직노동자들, 특히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교묘하게, 부당노동행위 하는 부분들이 검찰에 올라가면 거의 99%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1600만 전체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노동부의 위상이, 그렇게 분명하게 부당노동행위라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저희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다라면 법에 따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모두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이 법안은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좀더 의사결정구조를 신속하게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체토론에 큰 사항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 용역 검토 의뢰 중이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5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용역검토보고서가 들어오면 함께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위원장님,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조원진 위원**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어떤 용역을……

○**조원진 위원** 통합 문제에 대한……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통합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합은 정부 전체로서는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지는 오래 됐고요, 제가 이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것도 꽤 오래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가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산재의료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양측의 이사급, 그다음에 본부장급들을 다 망라해서 통합추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추진단장을 잠정적으로 하고 그 위원들을 여러 기관의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매월 중요한 이슈를 두세 가지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합을 했을 때 산재의료원의 9개 병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자라고 해서 지금 학자들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委員長 秋美愛** 지금 보건사회의료원에서 통합 이후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관계 연구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면 전문적인 심사를 해 달라 하는 민원 제기가 위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같이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민원을 접수한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대체토론이 불가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 의견만 얘기할게요.

사실 국감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거든요. 지금 용역의 문제하고 국감에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노조위원장도 나오고 다 나와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다’ 해 가지고 추진이 심도 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달까지, 만약에 그게 우리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의뢰한 용역이 아니고 산재의료원에서 사적으로 의뢰한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담당국장이 모르고, 산재의료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벌써 국감에 어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위원장님과 조원진 위원님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흥희덕 위원님!

○**흥희덕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장관님께 질의하는 것은, 국감 때도 충분히 이거 문제가 된 것이고 저 자신이 또 인천중앙병원도 한 번 가 보고 둘러보고, 또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께서도 한 번 가 보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의 통합은 단순히

유사기관의 통합뿐만 아니라 통합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재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산재의료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과를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현재 이 법안을 제출하였고, 본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재의료원 산하의 인천병원도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가 보니까 잘못된 산재병원 전문화 추진으로 인해서 운영 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진료과 폐쇄로 인한 지역 민원, 또 폐과된 진료과에는 가 보니까 임대 형태로 해서 치과를 재개원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적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중앙병원의 경우에 진료과가 폐과된 지난해 8월 이후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억 6000만 원의 적자와 비교할 때 8억 4000만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을 했고, 대전중앙병원의 경우도 진료과가 폐과된 2009년 1·2월의 적자가 10억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경우의 6억 5000만 원보다 3억 5000이 많은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노동부의 산재의료원 통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환노위 전문위원님들이 산재전문화 역할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부는 뚜렷한 산재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법안 통과를 지금 정말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오늘 많이 안 계시는데, 국가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다 다친 산재환자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질 높은 포괄적 산재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통합 법안을 제출해 놓은 정부는 통합 이후 산재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나갈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적인 노동조합이 한 게 아니라 노동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결과

를 토대로 해서 산재의료원 및 산재환자단체, 전문가와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통합 이후 질 높은 산재서비스, 고용 방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된 통합 법안을 다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은 국가 산재관리 시스템의 정비로 산재환자 중심의 진료와 요양 및 재활을 통한 조속한 사회 복귀의 체계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양 기관의 통합 법안이 제출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노동부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고요.

이에 본 위원은 노동부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통합 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하는 이 문제는 제가 장관으로 오기 오래전부터 산재의료원의 부실한 여러 가지 운영실태랄까, 또 원래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해야 할 산재의료 환자들을 보다 더 충실하게, 말하자면 진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오랫동안 한 하나의 결론으로서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관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러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국가정책으로 볼 때 새 정부가 들어서 통폐합 차원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통폐합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지시한 바도 없고 노동부에서 어떤 연구용역이 산하, 우리 국내에서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후 이것이 통합이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산재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방안을 놓고 아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통폐합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잠깐만요……

○**委員長 秋美愛** 홍 위원님, 더 급한 청년실업 이거 좀 나갑시다.

장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그런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원 중에 사실은, 상당히 이것도 여러 측면에서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의 몇 분은……

3월에 용역 나온다고 했다가 또 그것이 유보가 되어서 5월에 나온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5월이라 봐야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토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역 의뢰한 것이고, 또 지난 국감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열심히 지적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왕에 기다린 것, 5월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서두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가 반영하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마침 또 그 민원을 많이 받으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종결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유보를 하도록,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을 잠깐 우리 산재국장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산재국장님, 아까 그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그 민원을 받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중요한 말씀을 조금……

○**委員長 秋美愛**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잠깐만 들어 보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정해 주시고 토론도 하실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몇 가지 팩트 부분에서 인식이 저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통합추진단장으로서 그간에 회의를 무려 여섯 번이나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양 기관의 노조도 다 만나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 논의했던 소위 산재의료원 전문화와 관련된 일부 반대의견을 지금 피력해 주신 것이고, 지금이 두 기관의 통합에 관한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양 기관의 노조 다 이 두 기관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리고……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국장님.

더 나아가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체토론 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받아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체토론은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제22항 홍일표 의원님과 최철국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홍희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또한 정부가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5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김재운 의원님 외 1인의 소개로 2008년 11월 7일자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대체토론하려고 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므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법률심사 시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회법 제125조2항과 위원회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홍희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 청년실업이 참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들을 많이 발의하셨는데요, 참석하는 우리 위원이 지금 너무, 이쪽에 앉아 있는 줄에 저밖에 없고 이래서 아까 하다가 유보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을 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좀…… 여기에 세 분이 남아 계신데 할 수 있을까요?

○**委員長 秋美愛** 사실은 뭐 아까 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중 있는 역할, 또 책임감을 많이 말씀을 하셨으면, 저로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상정된, 대체토론하기로 한 청년실업에 대한 이 법안은 시급성을 다루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희덕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실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위원회 활동이 먼저 중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재운 위원님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계십니다. 그것도 또한 정말 시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체가 굉장히 시급성을 놓치면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계신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위원회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통합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 명의로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 자문위원들 몇 분을 선정해서 좀 우리 상임위 소속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통합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세 분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법에 담아내야 될 중요한 청년실업 문제의 부분은 지금까지 고용률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효성을 거두려면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야 된다,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의무조항으로 해야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서 일면 굉장히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권고조항으로 하니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바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런 의견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청년 미취업자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드시 좀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무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좀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원진 위원** 제가 좀……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사실 이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시급성을 구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경제난 때문에 말이죠 정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자꾸 다 넣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또 언제 전문위원들 법안 그것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 지금 한두 번 다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지금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법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국회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委員長 秋美愛**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두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각자 내신 안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선정한 자문위원의 조력을 받아서 위원회 수정안이 빠른 시일 내

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8항~제22항까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제25항 김상희 위원님과 박대해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강성천 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제9조와 제18조2의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상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사용자가 요청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범위 내에서 더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정부 개정안대로 할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적응기가 지나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사업장이 있으면 불법을 마다 않고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사업장에 묶어 두게 될 경우 사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처음에 입국할 때 5년을 통으로 해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입국할 때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것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사업장에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2

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에서는 3년이나 5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 대신에 과거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도 ILO에 진정을 제기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극히 불안하게 한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3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경기 침체에 외국인력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어떤 경우에 허용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아주 제한적으로 써 있어서 마치 인신 구속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행법에 있는 25조1항제1호의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상으로 운영을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 경우에 상당히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로계약 기간을 늘렸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인신 구속 상태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매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인력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이직이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벽 인력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재외동포들입니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바로 새벽 인력시장에서 들으신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서 금년부터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저희 건설 일용근로자, 국내 일용근로자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관리를 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바로 다음 달부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취업 교육을 받고, 특히 건설 산업 안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취업 교육을 받고 거기서 취업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 재외 동포에 한해서만 건설 현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재외 중국 동포,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성천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외국인 고용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어서 할 만하면 다른 데로 자꾸 이동한다고 하는 그 현장의 소리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그 부분이 정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면 또 그 사업장에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양자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

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주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간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또 정주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상한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 이동 금지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많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로계약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주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강제 노동의 위험도 있고요.

특히 최초 3년 고용 후에 기간을 연장할 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결정되는 문제는 근로자를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하게 만들게 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좀 미미하다. 일례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고를 해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났고, 미등록이 될 처지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조항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익 개선 효과를 보려면 직장 이동횟수나 사유 제한 자체를 대폭 늘리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구직기간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삭제해야 하고, 현재 구직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님께서 주시든, 누가 주시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로운 노동, 직장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들어올 때 자기를 취업시키고자 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거기서 합의한 임금 등등을 수용한 상태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와서 보면 또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일자리가 주변에서 보이고 하니까 사실은 그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우리 일반 국민과 같이 동등한 그런 근로계약의 자유를 갖게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초 고용허가제 기본 취지를 사실은 좀 존중을 해서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또는 부당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부분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로 인해서 지금 해고가 된 근로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 구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간 내에, 2개월 내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칙으로는 3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온 것이고, 그러나 고용관계가 서로 좋아서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들 가 보면 사실상 사업주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런 인권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외국

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 특히나 우리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 잘 가지 않고 꺼리는 소위 3D업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곳에서 그분들을 많이 써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그렇게 영세한 사업장들이 그만큼 또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이주노동자 중 법정 액수 외에 추가 비공식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권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국 비용에는 한국어 학원 비용, 한국어 시험 기간 있을 동안에 도시에 체류하는 비용 등 별도의 기능 테스트 도입은 공급을 줄이는 효과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과다한 비용 부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짚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되었던 비리나 이런 것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말하자면 브로커라든가 이런 쪽의 개입에 의한 어떤 부당한 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대행기관으로 꼽히는 곳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인데 이전 산업연수제 시절 온갖 비리와 부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행위 등 악명 높았던 곳들입니다. 이들이 이미 교육, 사업주 업무 대행 등 부분적인 대행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이들 대행기관의 업무를 더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그나마 현재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를 포함해 민간 인사들

의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 관련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행기관의 경우에 종전 산업연수생 때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일을 맡기는 것은 결코 아니고 사용자가 해야 할 어떤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외국인 고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더 충실한 본래의 업무에 더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당 국가 10여 개국의, 15개국입니까? 대사를 직접 한번 소집을 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국가 대사관 쪽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국 근로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우리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은 결코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노동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한 가지만……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이 몇 가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첫째는 인권침해 부분이 일부지만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거보다는 현지에서, 본인이 사는 국가에서 돈의 어떤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것도 국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뺏어 나가고 세계적인 한국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좋을 때는, 필요할 때는 많이 쓰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희 핵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제가 지적해 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대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홍희덕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것을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제가 외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국가에서는 벌써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 정책을 잘못 쓰고 나면 또 과거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3년 플러스 2년을 할 경우에 국적취득 문제하고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5년 같으면 국적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렇게 되면 5년 들어와서 그 분들이 국적취득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동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부하고 또 다른 외교통상부하고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이 법안을 성안한 단계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도 보면 “3년 플러스 2년 미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체류 비자는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서 발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국적취득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을 하고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단지 하나 그 분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기간을 채우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열린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홍희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 케이스 5년도 한 가지 방법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5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좀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반한 사람, 반한국적으로 감정이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인권적인 침해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와서 코리안 드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어렵더라도, 3D 업종에 주로 있는 분들이고 또 사람을 가장 구하기 힘든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5년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3 플러스 2년의 안을 준비했던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로 하면 3년을 근무한 다음에 2년을 다시 취업하려고 하면 한 달 동안 반드시 밖에 나갔다 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갔다 와야 되는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아예 5년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5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서 그것은 기간제 고용계약치고서는 너무 장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3년을 하고 나갔다가만 들어오면 다시 재고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3년을 하고 그냥 자진 귀국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5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 플러스 2년이라는 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출입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업인력공단이 전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 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동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기관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런 부분의 업무가 아니고 그냥 사업주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단순한 대행 업무입니다.

그 대행기관의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를 미리 상정하고 하위 법령 작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 한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항상 유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17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부에서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대체토론이 안 이루어졌는데 사실 양 기관 통합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다 인준을 한 터입니다. 대신에 법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보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법적인 사항이 노조에서, 노동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통합 이후에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이 모델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라

는 문제인데 일부 노조입니다, 전체 노조가 아니고 일부 부분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산재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갈 거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윤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예요, 노동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죽 읽어 보고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부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가서 지금 사항을 설명도 드리고 민원을 받은 분, 저한테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이게 일부 의견으로서 전달하는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게 몇 몇 사람들이 통합 이후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를 걱정하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통합 전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직접 노동부에서 좀 뛰어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간사 간에 논의한 심사 사항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와 노동부 소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윤
박대해	박준선	원혜영	이두아

이 화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추 미 애
홍 희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노동부

장	관	이	영	희
기 획 조 정 실 장		송	영	중
고 용 정 책 실 장		신	영	철
근 로 기 준 국 장		이	기	권
산 업 안 전 보 건 국 장		정	현	옥
고 용 정 책 관		이	재	갑
고 용 평 등 정 책 관		허	원	용
고 용 서 비 스 기 획 관		이	우	룡
환 경 부 환 경 정 책 실 장		홍	준	석

○출석 진술인

최예용(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욱(가톨릭대학교 의대교수)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김동일(성균관대학교 의대교수)
박윤원(법무법인 한강 변호사)